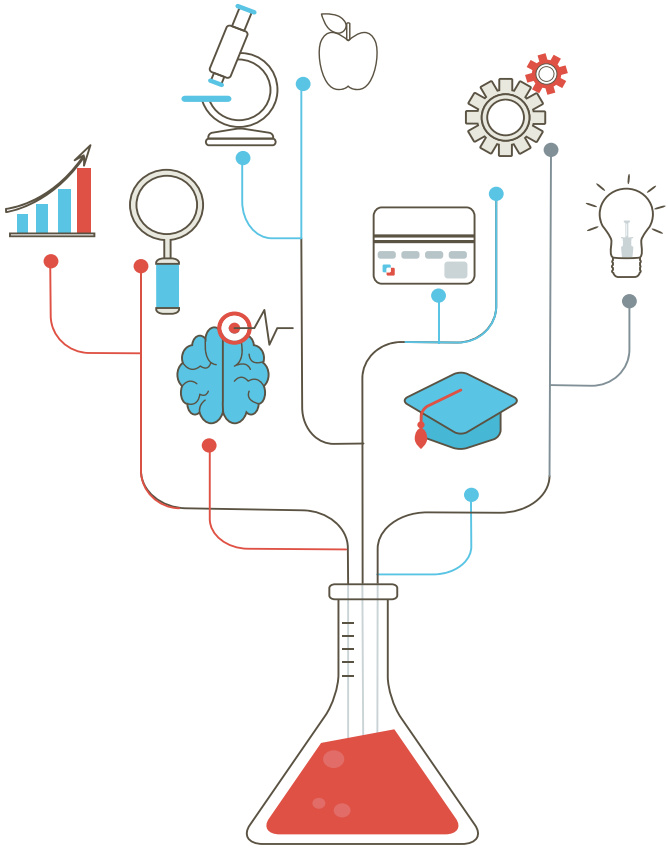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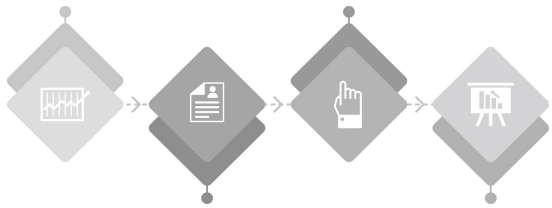
재능계발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창의융합인재 육성

2022 경기영재교육 실무편람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22 경기영재교육 실무편람



Ⅰ. 영재교육의 이해

1. 영재교육의 이념 및 목적 ····· 5
2. 영재에 대한 이해 ····· 6
3. 영재교육 진흥법에 대한 이해 ····· 8
4. 영재교육기관 설치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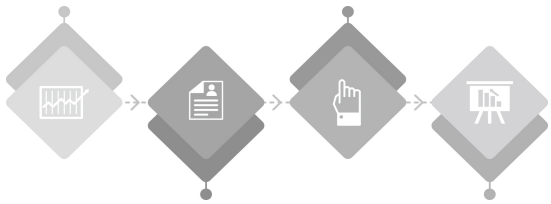
Ⅱ. 재능계발영재학급 운영

1. 연간 계획 수립 및 운영계획서 수립 ····· 17
2.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 ····· 18
3. 영재교육 지도강사 선정 ····· 20
4. 예산 편성 및 운영 ····· 22
5. 교구 및 준비물 ····· 26
6. 개강식 ····· 28
7. 교과 교육과정 운영 ····· 29
8.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 31
9. 창의적 산출물 지도 ····· 33
10. 영재교육기관 설치 · 승인 신청 ····· 35
11.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절차 ····· 36
12. 영재성발달기록부 ····· 37
13. 수료식 ····· 40

Ⅲ. 영재교육원 운영

1. 연간 계획 수립 ····· 45
2. 영재교육원 운영 개요 ····· 46
3. 영재교육원 설치 · 운영 현황 ····· 47
4. 영재교육 지도강사 선정 ····· 49
5. 예산 편성 및 운영 ····· 50

2022
경기영재교육
실 무 편 람



Ⅳ.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

1. GED 시스템 ····· 53
2. GED 통계입력 ····· 55
3. GED 선발시스템 ····· 56
4. 영재성발달기록부 작성 ····· 57

Ⅴ. 각종 관련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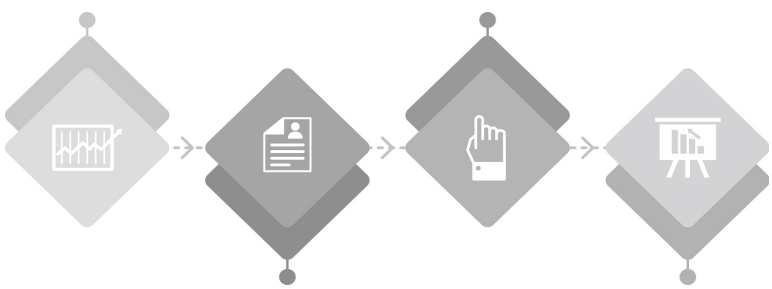
1. 개강식, 수료식 서식 ····· 71
2. 교과 교육과정 필요 서식 ····· 83
3. 창의적산출물 지도 ····· 90
4. 교구 및 준비물 ····· 94
5. 수업일지 및 자기평가지 서식 ····· 97
6. 영재교육기관 설치 승인 신청 계획서 서식 ····· 98
7. 영재교육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관련 자료 ····· 122
8. 창의융합상상소 운영 규칙(학칙) 예시 ····· 126

Ⅵ. 관련 법령

1. 영재교육 진흥법 ····· 133
2.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 140

I

영재교육의 이해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Ⅰ 영재교육의 이해

1 영재교육의 이념 및 목적

가. 영재교육의 이념

교육기본법 제1장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내재적 목적인 인격체 형성 및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외재적 목적인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목적을 두고 있다.
- 교육의 내·외재적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는 교육의 '평등성'과 교육을 통해 개별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할 수 있는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함으로 성취될 수 있다.

>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기본법 제19조(영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는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영재교육의 목적은 교육기본법의 교육 이념에 근거하여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영재들은 특수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 수준과 심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영재교육의 목적

영재교육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영재교육은 우수한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계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영재들이 일반교육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할 수 없다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이들에게도 평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2 영재에 대한 이해

가. 영재의 정의

>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정의)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영재는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한 성취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그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정규학교 교육과정이 제공하는 것 이상의 특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전문가에 의하여 판단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1972년 미국 교육부 Marland 보고서)
- 재능이 드러나지 않지만, 특별한 교육을 받으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도 영재로 본다.

나. 영재의 출현분야

- 영재성은 수학, 과학, 정보, 음악, 미술, 체육, 무용, 인문사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 미국 교육부는 영재성을 다음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 일반적 지적 능력(General intellectual ability) ■ 예능계 능력(Visual and performance arts)
■ 창의적 사고 능력(Creative or productive thinking) ■ 운동신경 능력(Psychomotor ability)
■ 리더십(Leadership) ■ 특정 교과에 대한 능력(Specific academic aptitude)

다. 영재의 특성

인지적 특성	■ 많은 양의 정보를 보유하며, 정보에 대한 기억력이 뛰어나다. ■ 수준 높은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문제해결에 쉽게 활용한다. ■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높다. ■ 언어적 발달이 빠르며, 언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 정보처리 능력이 탁월하다. ■ 사고가 유연하고 사고과정이 빠르다. ■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 집중력이 뛰어나고 불굴의 목표 지향적 행동을 한다. ■ 독서의 범위와 지적 취미활동이 다양하다.
정의적 특성	■ 모든 일을 자율적, 자의적, 자발적으로 해 나가는 경향이 높다. ■ 남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지만, 모방하거나 무조건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자아개념이 굳건하고 건전하다. ■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자기가 얻은 해답에 긍지를 가진다. ■ 매사에 건전하게 판단하고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 대인관계에서 복잡한 관계에 휘말리는 것을 싫어한다. ■ 비교적 과묵하며 화를 잘 내지 않는다.
창의적 특성	■ 기발한 생각이나 제안으로 부모를 놀라게 한다. ■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하며,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도 겁내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한다. ■ 주어진 문제나 감지된 문제로부터 통찰력을 동원하여 새롭고, 신기하고, 독창적인 산출물을 만들어 낸다.
심리·정서적 행동 특성	■ 자신이 하는 일에 관심이 많고 과제 집착력이 높기 때문에, 주변 일이나 친구관계에 무관심하기 쉽다. ■ 학습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학교 공부에 흥미를 잃고 공부를 하지 않거나 문제되는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 수업시간에 주의 산만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 완벽하게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한다. ■ 자기의 기대에 부합하는 성취를 하지 못하면 무기력에 빠지거나 자기 비하,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 자신감이나 자기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협동이나 타협을 못하기도 한다.

3 영재교육 진흥법에 대한 이해

가. 국가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

국가적 측면	개인적 측면
영재교육은 “국가 경쟁력 강화” 라는 국가적 측면과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라는 개인적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영재교육진흥법령의 입법취지는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여 소질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교육기본권에 충실하고, 그 결과 우수 인재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이다.
■ 영재교육진흥법의 제정 등 국가 차원에서 영재교육의 법제화를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자산인 창의적·융합적 인재의 확보를 지원할 뿐 아니라 다양한 잠재력 개발의 기회 확대를 통하여 영재교육의 서비스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영재교육의 기회 확대, 영재교육 질적 수준 제고, 영재교육 효과성 강화 정책을 통해 영재교육의 최적화를 통한 창조적 인재육성에 목표를 둔다.	■ 영재교육은 우리나라 헌법 제 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기본권”, 즉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장애의 정도에 맞는 시설 등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을 갖추어 “공교육” 차원에서 특수교육을 실시하듯이, 영재교육도 일반교육 체제 하에서는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타고난 잠재성을 사장 당할 우려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나. 영재교육 진흥법의 성격

영재교육 진흥법은 일반법적 성격과 동시에 특별법적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영재교육 진흥법의 일반법적 성격

- 영재교육 진흥법은 그 명칭만 보면, "진흥법"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영재교육 진흥 책무 등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강구를 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성격을 지니는 법률인 것으로 보인다.
-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의 책무" 및 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중앙 및 시·도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영재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임용" 등이 망라되어 있어 영재교육이라는 특별한 영역의 교육을 공교육 차원에서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재교육 진흥법은 영재교육에 관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 영재학교의 설치·운영에 관한 시행령에서 교육과정, 수업일수, 학급편성, 학년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초·중등교육법령과 다르게 규정할 경우 이는 특별법으로서 예외규정을 규정한 것일 뿐 그 개념은 초·중등교육법령과 동일한 것이다.

영재교육 진흥법의 특별법적 성격

- 영재교육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 영재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새로운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기존의 교육기관인 학교 중에서 영재학교를 전환하거나,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이 바로 영재교육 진흥법이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대하여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 유아교육 진흥법 또는 특수교육 진흥법과 비교해 볼 때, 유아교육 진흥법이나 특수교육 진흥법은 각각의 교육 목적을 위한 학교로서 유치원이나 특수학교를 당해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일반학교에 관한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을 따르면서(유치원과 특수학교는 각각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음), 유아교육 또는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영재교육 진흥법은 새로운 학교의 종류로서 영재학교를 설정하지 않고(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법률상 학교의 종류와 우리나라 교육의 학제를 동시에 규정한 조항임), 영재교육기관의 종류로서 영재학교를 설정하면서도 기존의 학교를 전환하거나 새로이 학교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영재학교는 기존의 초·중·고등학교의 성격을 가지면서 영재교육을 위한 새로운 학교가 되는 것이다. 이는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고등학교의 하나의 종류이며 새로운 학교의 종류가 아닌 것과 유사한 것이다.
- 학생 선발,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임용 등에서도 다른 교육관계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영재교육 시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재교육 진흥법은 초·중등교육법과 달리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초·중등교육법령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점은, 초·중등교육체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교육관계 법령이 영재교육의 영역에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는 입법권자의 의지에 따라 영재교육정책을 초·중등교육정책과 달리 꾸려나갈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영재교육 진흥법의 본문에서는 특별법적 내용의 상당 부분이 하위법령에 위임되고 있다.
- 이는 영재교육의 특성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하여 타 법령에 얽매인 경직된 시행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법 제6조에서는 영재학교의 설립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면서 이를 초·중등교육법령에 의한 학교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지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9조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설립·설치 기준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31호, 2017.12.19., 일부개정]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시행일 2019.7.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2019.7.2 타법개정]
- 영재교육진흥법과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www.law.go.kr)
-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8~2022) 주요내용
  -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재능계발 및 탐색의 영재교육 기회 제공
    (경기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2019.6.4.)에서 '재능계발영재학급'으로 명칭변경 심의 의결)
  - 소외계층 학생의 영재교육 지원
  -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맞춤형 영재교육 운영

4 영재교육기관 설치

가.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설치(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0조, 제21조)

제20조(영재학급의 설치)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학칙
2. 영재교육 담당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급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3.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5. 학교법인의 설치·운영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6. 그밖에 영재학급의 설치승인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 예정일 90일전까지 그 설치계획서를 당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는 자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6.12.21.>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2. 국·공립연구소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과학·기술, 예술, 체육과 관련된 공익법인에 한한다)

②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학칙
5. 교원(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6.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7.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8. 수강료의 징수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9. 설치·운영예정일
10. 당해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류(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1. 그밖에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전에 실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교육감이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연구기관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6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2.21.>
1.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교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제목개정 2006. 12. 21.]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12.21.>
1. 당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2. 영재교육전문가
3.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4.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5.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12.21.>[제목개정 2006.12.21.]

다. 영재교육 담당 교원 규정(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6조 1항, 제27조 1항)

제26조(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①영재교육원의 교원으로 원장 및 강사를 두되, 그 임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원 교원 임용권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영재교육원에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0.14.>
③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는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임용하되, 그 임용권한의 일부를 영재교육원의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0.14.>
④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의 보수·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정한다. <개정 2008.10.14.>

제27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보수·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공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라. 영재교육기관 운영(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2조, 제33조, 제3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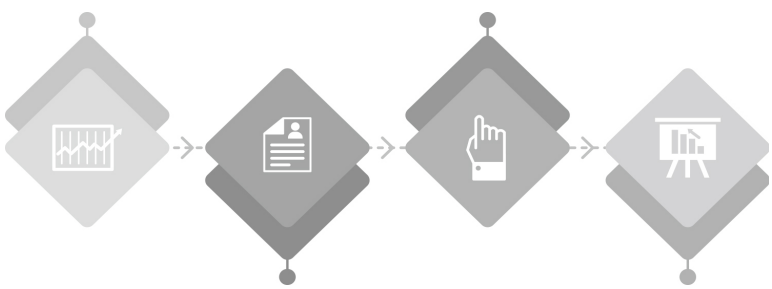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①영재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기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수업일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급편성(영재학급을 둔 학교의 영재학급 편성을 포함한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⑤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수업시간중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과활동외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등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
⑥학교의 수업시간에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학교의 장은 영재교육기관에 출석한 것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⑧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외에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33조(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34조(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① 삭제 <2008.10.14.>
②영재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영재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를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10.14.>
③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는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교육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에서 사용할 도서 또는 교재 등을 개발하여 이를 영재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II

재능계발영재학급 운영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Ⅱ 재능계발영재학급 운영

1 연간 계획 및 운영계획서 수립(안)

월	주요 사업	필수	권장	관련 페이지
1~2	전년도 보존자료 정리 보관	●		
	영재교육기관별 교육과정 편성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	●		105
	중1, 고1 및 정원 미충원기관 3월 선발 계획 수립 및 공고	●		
3	중1, 고1 및 정원 미충원기관 3월 선발	●		
	영재교육 지도강사 위촉	●		20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조직	●		12
4	개강식 및 학부모, 학생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운영 가능)	●		28, 73
	GED 영재성발달기록부 환경 설정 및 작성	●		37, 57
	기관별 교육과정 운영	●		
	창의적 산출물 운영 계획 수립 및 지도	●		33, 90
	2022년도 영재교육기관 설치 변경 및 소외계층 운영비 신청	●		
5	학부모 대상 수업공개 (온라인 운영 가능)		●	
	GED 통계 입력	●		55
6~8	차년도 영재교육기관 설치·승인 신청	●		35, 98
	비교과활동		●	31
	12월 교사 관찰·추천 선발 계획 수립 및 운영	●		
10	영재교육기관별 창의적 산출물 자체 발표회	●		33, 90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공고(원서접수일 1개월 전)	●		62
11	학교추천위원회 GED 추천 및 서류제출	●		56
12	12월 선발 결과 처리 및 차년도 교육 대상자 선정	●		
	예산정산서 제출(소외계층 운영비 등)	●		
	GED 영재성발달기록부 입력 마감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지역공동 영재학급의 경우, 이수 결과를 수료생 소속교로 공문 발송	●		68
	수료식 (온라인 운영 가능)	●		40, 73

※ 각 자세한 세부 일정은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공문 확인

※ 위 일정은 영재교육기관별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2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가. 위원회 조직하기(모든 기관 필수)

1) 위원 구성(학교추천위원회와 중복 가능)

구분	자격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구성인원	
		가능	권장
위원장	위원 중 1인 호선	1명	1명
위원	해당 기관의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 1. 영재교육전문가(영재교육 관련 학위 취득자, 대학 교수 등) 2.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3. 당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4.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관련 연수 이수 교원 등) 5.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14명	4~9명

※ △△초등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조직(예시)

직책	직위	소속	성명	심의 내용	비고
위원장 (1인)	교감	△△초	○○○	•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그밖에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목개정 2006. 12. 21.] ※ 기관별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부결재로 갈음함(수료대상자 심의 포함)	위원회 총괄
위원 (5인)	교사	△△초	○○○		영재업무 담당자
		△△초	○○○		영재교육 관련 연수 이수
		◇◇초	○○○		본 기관 지도강사
		□□초	○○○		본 기관 지도강사
		□□초	○○○		과학영재교육 석사

나.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

1) 심의 내용

> 제16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2.21.>
> 1.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중략)
> 3. 그 밖에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2) 심의 방법: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3) 심의 결과: 기관장(학교장) 내부결재 필수

※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연간 일정(예시)

월(예시)	심의 사항	비고
3월	**3월 선발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3월 선발 하는 기관만 실시
8~12월	12월 선발 관련 심의 차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심의	선발 대상, 규모, 방법, 영역별 반영 비율 등을 심의하여 선발공고에 반영
1~2월	**3월 선발 관련 심의** 차년도 영재학급 운영을 위한 학칙 개정 등	3월 선발 하는 기관만 실시 선발공고에 반영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와 학교추천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이 중복 되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편람에 안내된 자격에 부합되면 전원 중복되어도 무방합니다. 영재교육 관련 업무 간소화를 위해 중복 위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의 구성은 필수 인가요?>

○ 학부모 위원의 구성은 필수는 아니고 학교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영재교육 관찰·추천 희망 대상자의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안됩니다.

3 영재교육 지도강사 선정

가. 선발 절차(예시)

순서	주요 내용	비고	시기
1	강사 수요 산정	규모와 교육과정을 고려	전년도 12월
2	기관 소속 내부 강사 재원 파악	소정의 영재교육 관련 직무 연수 이수자 연수를 이수하지 않고 선발된 자는 해당 년도 안에 반드시 연수 이수	2월
3	타 기관 소속 외부 강사 선발 여부 결정		
4	외부 강사 모집 공문 발송	외부 강사를 모집할 경우 반드시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	
5	내부 및 외부강사 선정		
6	외부강사 위촉 공문 발송		3월
7	지도강사 워크샵 개최		3월

나. 강사 선정 자격(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7조)

1) 영재학급 강사
   가) 초·중등교육법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취득자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상담담당강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다. 영재학급 강사 선발 방법

1) 영재학급 개설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소정의 영재교육 관련 직무연수(원격연수 포함)를 이수한 자 또는 1년 이내 이수 가능한 교사 중 희망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함
2) 다른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를 강사로 채용할 경우에는 소정의 영재교육 관련 직무연수(원격연수 포함)를 이수한 자 또는 1년 이내 이수 가능한 자 중 학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심사 후 선정함

라. 영재교육 관련 직무연수

1)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영재교육 직무연수

순서	연수명	연수대상	연수시간	연수기간 (예정)
1	영재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기초)	초중등교사	15시간	2022.6.~8.
2	영재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심화)	초중등교사	45시간	2022.8.~10.

2) 원격연수 사이트 안내(예시)

순서	연수명	연수시간	연수기관 및 사이트
1	스마트한 교실을 위한 영재교육비법	30시간	티처빌 (www.teacherville.co.kr)
2	영재교육의 기초	60시간	사제동행 (www.education.or.kr)
3	영재상담	60시간	
4	체계적인 영재판별	30시간	
5	알기 쉬운 영재교육과정(기초편)	30시간	
6	알기 쉬운 영재교육과정(실제편)	30시간	
7	미래를 그리는 영재교육지도교사(상,하)	각 30시간	한국교원연수원 (www.hstudy.co.kr)
8	미래를 그리는 영재교육지도교사과정	60시간	
9	영재교육의 이해와 운영의 실제 (원격컨텐츠 하반기 개설 예정)	15시간	중앙교육연수원(http://www.neti.go.kr)

4 예산 편성 및 운영

가. 영재교육 운영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1) 영재교육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음
2) 영재학급 학칙에 수익자 징수 근거를 마련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반드시 필요함
3) 수익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영재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감면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4) 수익자 부담으로 징수된 비용은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활용하고 정산함

나.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수당지급 기준 준수

1) 강사수당, 심사수당, 심의수당, 원고료, 선발 관련 수당 등 각종 수당의 예산집행은 「202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202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사용 억제해야 함 (※ 단, 수익자부담경비 전액을 강사수당으로 편성할 수 없음)
2) 영재교육 운영 수당 지급 요약표

구분		교과지도 수당	선발관련 수당	위원회 참석 수당	비고
학교기본운영비	본교교원	○	×	×	**본교 교원의 경우 교과지도수당외에 각종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
	타교교원	○	○	○	
수익자부담경비	본교교원	○	×	×	
	타교교원	○	×[2]	○	
목적사업비[1]	본교교원	○	×	×	
	타교교원	○	○	○	

[1] 목적사업비란 도교육청 본예산 중 학교회계전출금 형태로 소외계층 및 일부 예술영재학급에 지급되는 예산을 의미함

[2] 차년도 학생선발에 대한 예산을 현재 학생의 수익자부담으로 사용 불가

※ 영재학급의 경우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명시된 수당 외 기타수당 지급 불가 (기타수당의 예: 인솔수당, 운영수당, 관리수당 등) →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

※ 단, 창의적 산출물지도수당은 영재교육기관 계획에 의거, 교과 지도수당에 준하여 지급 가능

다.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경비 계획안(예시)

(단위: 원)

구분	지출예정액	산출 근거	비고
개강식, 수료식	100,000	50,000원×2회=100,000원	• 수익자부담금 포함 총 예산 (1학급 기준)
학습자료 구입비	1,440,000	1,000원×20명×72시간×=1,440,000원	
강사수당	2,880,000	40,000원×72시간=2,880,000원	
영재캠프 운영비	800,000	40,000원×20명×1회=800,000원	
총계	5,220,000		

※ 영재학급의 교과수업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정된 시간당 강사수당을 지급하며, 주제별 체험학습 등 영재교육기관 교과시간 외에 영재교육을 운영할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불가함. 단, 창의적 산출물지도수당은 영재교육기관 계획에 의거, 교과 지도수당에 준하여 지급 가능.

라. 선발 관련 수당 지급 기준

1) 도교육청 운영비(소외계층 운영 지원비 포함): 차년도 선발 수당 지급 가능

2) 수익자부담 운영비: 차년도 선발 수당 지급 불가

Q&A

<영재학급 수익자부담경비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영재학급도 다른 방과 후 활동과 동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방과 후 활동 예산을 심의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단, 교구 교재비는 제외됩니다. (다른 방과 후 규정과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마. 2022학년도 예산편성 기준 단가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구 분	지 급 대 상	기준 단가		
		2022년	2021년	증감
특별강사 Ⅰ	○ 전·현직 장관(급)·교육감·광역자치단체장·국회의원·대학총장(급) ○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해당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 400,000원 초과 200,000원	좌동	-
특별강사 Ⅱ	○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공직유관단체장(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포함) ○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 이에 준하는 자로 해당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 300,000원 초과 150,000원	좌동	-
일반강사 Ⅰ	○ 대학(교) 전임교원 이상 ○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이사급 이상) ○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 문화·예술 등 특별 분야의 전문 강사 ○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 ○ 유·초·중등학교장 (교(원)장 경력자 포함) ○ 교육경력 30년이상 교육공무원 ※ ○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특별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본 200,000원 초과 100,000원	좌동	-
일반강사 Ⅱ	○ 대학(교) 비전임교원 ○ 5급(상당) 이하 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 포함) ○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 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본 130,000원 초과 60,000원	좌동	-
보조강사	○ 각종 실기, 실습 보조자 ○ 분반, 분임활동 지도	기본 40,000원 초과 20,000원	좌동	-

※ 교육경력 30년 이상 교육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장학관(장학사), 연구관(연구사), 교감, 교원 등)

주 : 1) 기본료: 1시간 미만, 초과 : 기본 1시간 초과 후 시간당 단가

☞ (초과)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않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2) 학생 대상 교육의 경우 학교급별 정규 교육과정 수업시간을 기준단가로 적용

3) 수강 인원수에 따른 가산 가능

☞ 79명 이하 : 100%, 80~119명 : 120%, 120~159명: 140%, 160~199명 : 160%, 200명 이상 : 200%

4)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 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기관의 범위는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을 말하며 각각은 독립된 기관으로 봄

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강사에게 강의 등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사례금은 같은 법 시행령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공무원 외부강사 초빙 시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준수

6) 공무원이 아닌 경우 원거리 강사초빙에 따른 여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바. 원고료

구 분	단 위	기준 단가(원)			비고
		2022년	2021년	증감	
국 문	◦ A4용지 1매당(글자 12포인트, 행간160, 상.하 여백 20㎜, 좌.우 여백 25㎜) ※ 강의 원고료는 시간당 2.5매 이내	15,000원	좌동	-	원고별 중복지급 불가
외국어	◦ A4용지 1매당(글자 12포인트, 행간160, 상.하 여백 20㎜, 좌.우 여백 25㎜) ※ 강의 원고료는 시간당 2.5매 이내	13,000원	좌동	-	
사이버강의 콘텐츠 제작	◦ 동영상 제작(10분)	150,000원	좌동	-	
파워포인트	◦ 1면당 ※ 시간당 9면 이내	5,000원	좌동	-	

사. 편집수당, 자료개발수당, 심사·심의수당

구 분		기준 단가			비 고
		2022년	2021년	증감	
편집수당, 자료개발수당, 심사.심의수당, 심판수당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 기본 : 70,000원 · 초과 : 30,000원	좌동	-	
	전문가 외	· 기본 : 40,000원 · 초과 : 20,000원	좌동	-	
원격연수과정 관리수당		· 일당 : 30,000원	좌동	-	원격연수과정 관리강사(연수생 200명당 1명)에게 지급

주 : 1) 기본료 : 2시간 미만, 초과 :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계상

2)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학교에서 주관하는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타수당 지급 금지(단,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업무에 대해 각급 학교 소속 교직원은 지급 가능)

아. 위원회 참석수당

구 분	기준 단가			비 고
	2022년	2021년	증감	
위 원 회 참석수당	· 기본 : 100,000원 · 초과 : 50,000원	좌동	-	· 공무원은 직접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초과 :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심사수당	· 기본 : 30,000원 · 초과 : 20,000원	좌동	-	

주 : 1)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학교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금지 (단, 교육청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임명, 위촉된 각급학교 소속 교직원은 지급 가능)

2)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여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5 교구 및 준비물

가. 교구 확보를 위한 준비 및 고려할 사항

1) 영재학급에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시설 및 기자재 현황 파악
2) 강사 협의회를 통하여 교과 교육과정 운영 시 필요한 교구를 선정하고 영재학급 운영계획서에 구체적인 교구 확보 계획을 수립
3) 충분한 교구확보를 위해 교구 구입 관련 예산을 적절히 확보
4) 교구구입은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학기 또는 학년도 단위로 구분하여 구입함
5) 소모품 형식의 교구와 반영구 보관 교구를 구분하고 따로 보관함

나. 시설·설비 현황 및 기자재 확보 계획안 (예시)

1) 시설·설비는 영재학급 예산편성 구입이 아니며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

시설명	설비 및 기자재 내용	사용 구분	면적	수용 인원	비고
일반교실	컴퓨터, LCD TV, 실물 화상기	공용	71.12㎡	20명 이상	
과학실	컴퓨터, LCD TV, 과학 실험 기구 등	〃	71.12㎡	20명 이상	
멀티실	컴퓨터(교사용 1대, 학생용 24대), 전자칠판	〃	71.12㎡	20명 이상	
서양화실	컴퓨터, LCD TV, 이젤, 프린터, 정물대	〃	71.12㎡	20명 이상	
디자인실	컴퓨터, LCD TV, 디지털 카메라, 디자인 책상, 플로터	〃	71.12㎡	20명 이상	
드로잉실	컴퓨터, LCD TV, 전자칠판, 정물대, 프린터	〃	71.12㎡	20명 이상	
음악실	컴퓨터, LCD TV, 피아노, 오디오, 악보사보 프로그램	〃	71.12㎡	20명 이상	

2) 시설 및 기자재 사용 시 발생되는 운영비용(수리비, 소모품 구입 등) 계획을 수립하여 영재학급 운영비에 반영해야 함

다. 교구 확보 계획안 (예시)

영역		교구명	보유 수량	확보예정수량			비고
				구입수량	단가	계	
수학	교구	지오픽스다면체세트	8	.	.	.	보유
		아발론	2	.	.	.	〃
		패턴블럭	10	.	.	.	〃
		소마큐브	5	.	.	.	〃
		어메이징 레빌런스	2	.	.	.	〃
		게임과 퍼즐 세트	.	4	50,000	200,000	확보예정
	도서	수학영재교수법 외 다수	.	3	20,000	60,000	〃

영역		교구명	보유 수량	확보예정수량			비고
				구입수량	단가	계	
과학	교구	진공실험장치	5	.	.	.	보유
		영상현미경	5	.	.	.	〃
		빛 진행실험장치	5	.	.	.	〃
		조노돔 시스템 케플러 세트	.	1	110,000	110,000	확보예정
	도서	과학영재교수법 외 다수	.	3	20,000	60,000	〃
음악	교구	피아노	10	.	.	.	보유
		바이올린	2	2	500,000	1,000,000	확보예정
		마림바	2	.	.	.	보유
	프로그램	악보사보프로그램	1	.	.	.	보유
	도서	음악영재교수법 외 다수	.	3	20,000	60,000	확보예정
미술	교구	퍼즐세트(건축관련)	.	2	100,000	200,000	확보예정
		디자인책상	20	.	.	.	보유
		정물대	3	.	.	.	보유
		컬러프린터	1	.	.	.	보유
	도서	인체해부학	1	3	50,000	150,000	확보예정
		미술 영재교수법 외 다수	.	3	20,000	60,000	확보예정
만화	교구	라인테스트기	2	.	.	.	보유
		카메라	2	.	.	.	〃
		컴퓨터	20	.	.	.	〃
		만화, 일러스트 실기도구	30	.	.	.	〃
	도서	만화영재교수법 외 다수	.	3	20,000	60,000	확보예정
		만화, 일러스트레이션 기초실기 책	10	.	.	.	보유

6 개강식

가. 개강식 ※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운영가능

1)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영재교육의 필요성 및 영재교육기관 운영계획을 안내함
2) 영재지도강사 소개 및 위촉장을 수여함
3) 강사를 초청하여 학부모 및 학생 대상의 특강 실시를 권장함. 영재교육의 필요성, 영재교육의 방향을 안내하여 영재교육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함양함

나. 개강식 준비

1) 계획한 것을 바탕으로 가정통신문을 만들고,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안내
2) 준비 사항

순	항목	내용
1	개강식 관련 업무 처리	개강식 시나리오, 가정통신문, 연수자료 등
2	가정통신문 배부	참석자 수만큼 제작 후 안내 (SMS활용)
3	연수자료 제작	영재학급 운영계획 및 연수자료 준비, 당일 배부
4	장소 점검 및 준비	현수막, 식순, 마이크 및 장비 점검
5	등록부 준비	참석자 명단 확인 후 개강식 당일 비치

다. 개강식 진행 순서(예시)

순	세부내용	담당자
1	개식사	사회자
2	국민의례	사회자
3	입학허가 선언	입학생 대표
4	신입생 선서	학교장
5	학교장 말씀	학교장
6	지도강사 소개	교감
7	영재학급 운영계획 안내	담당자
8	폐식사	사회자
9	영재학급 오리엔테이션	담당자

※ 학부모 연수 및 특강을 같이 진행할 경우 개강식 전·중·후에 실시할 수 있음

7 교과 교육과정 운영

가. 교과 교육과정 편성내용

1) **교과 활동은 72시간 이상** 편성하여 운영

2) 교과시수의 80% 이상 이수해야 수료 가능

3) 연간 교육과정 편성 예

월	주	요일별 날짜							공.휴일	학년별 수업 시수		누적 시수			비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화	수	교과	비교과	누계	
										초5	초6				
4	1						1	2							
	2	3	4	5	6	7	8	9		4.6(수) 개강식(2) 프로젝트 산출물 특강(2)			2	2	
	3	10	11	12	13	14	15	16		도형수의 모든 것1 (김00)	변인통제 (이00)	4		6	
	4	17	18	19	20	21	22	23		도형수의 모든 것2 (김00)	관찰과 추론 (이00)	4		10	
	5	24	25	26	27	28	29	30		수의 규칙성1 (김00)	동물의 구조와 기능1 (이00)	4		14	
5	6	1	2	3	4	5	6	7	5.5 어린이날	수의 규칙성2 (김00)	동물의 구조와 기능2 (이00)	4		18	
	7	8	9	10	11	12	13	14		전문가 특강(부모와 학생 같이)5/11(수) (2)			2	20	
	8	15	16	17	18	19	20	21		시어핀스키 삼각형과 프랙탈 도형 (김00)	알게된점 정리하여 발표하기 (이00)	4		24	
	9	22	23	24	25	26	27	28		융합형 프로젝트수업(3)			3	27	
	10	29	30	31	1					수의 규칙성3 (김00)	동물의 구조와 기능3 (이00)	4		31	
⋮															
8	19	7	8	9	10	11	12	13		8.12(금) 현장체험학습(6)			6	60	
⋮															
11	36			1	2	3	4	5		소리로 꾸미는 이야기2 (박00)	트러스 구조를 이용한 다리 만들기2 (최00)	4		86	
	37	6	7	8	9	10	11	12		소리로 꾸미는 이야기 발표하기 (박00)	트러스 구조를 이용한 다리 만들기 발표하기 (최00)	4		90	
	38	13	14	15	16	17	18	19							
	39	20	21	22	23	24	25	26							
	40	27	28	29	30	1	2			12.1.(목) 수료식(2)			2	92	
수업시수 총계										90	90	72	20	92	

나. 수업 프로그램 개발

1) 지도영역: 수학, 과학, 정보(SW), 예술(연극, 미술, 애니메이션), 인문사회, 발명 등의 융합교과

2) 영재교육 프로그램 활용

구분	내용	비고
학습내용	경기도교육청에서 개발한 자료를 활용 또는 영재교육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자료를 활용 : 내용은 재구성하여 적용	
교수학습모형	프로젝트학습(PBL), 디자인 씽킹 등	
교수학습방법	문제해결력, 호기심 유발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활용	

3) 참고자료

가. GED

: GED 홈페이지(https://ged.kedi.re.kr)-<영재교육종합자료실>

나.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홈페이지(https://www.gise.kr/)-교수학습자료실

8 비교과 활동

필수 운영	선택 운영
개강식(오리엔테이션), 창의적 산출물 지도 및 발표, 수료식	학부모 공개수업, 학부모연수, 교사연수, 체험학습(캠프) 등
모든 과정은 온라인 운영 가능함	

가. 필수 운영

1) 개강식 ※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운영가능**

■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영재교육의 필요성 및 운영계획 안내

■ 영재지도강사 소개 및 위촉장 수여

■ 강사를 초청하여 학부모 및 학생 대상의 특강 실시(권장)

■ 오리엔테이션

- 학생들에게 교육과정(교과, 비교과 활동) 및 기본 생활 안내
- 창의적 산출물 및 연구 방법 안내
- 교사와 학생 간 창의적 산출물지도를 위한 멘토링을 실시

2) 창의적 산출물 지도 및 발표

■ 프로젝트 수업 결과물 발표 또는 연구보고서 발표회 등 기관별로 특색있게 운영

3) 수료식 ※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운영가능**

■ 영재교육기관장 명의로 수료증을 발급하고 발급대장은 영재교육기관별로 보관

■ 교사, 관리자, 학부모, 지역인사 등 초청 권장

■ 학생들의 산출물 및 포트폴리오 전시 및 산출물 모음집 제작 권장

나. 선택 운영

1) 학부모연수

- 영재교육의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연수 실시 가능
- 개강식, 오리엔테이션, 학부모 연수 동시 진행 가능

2) 교사연수

-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워크숍(협의회) 실시
- 영재교육담당교사 연구회,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3) 학부모 공개 수업

- 년 1회 이상의 학부모 공개 수업 실시
- 학부모 공개 수업 날짜는 사전에 미리 공지하여 많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며, 학부모 공개 수업 후에 영재학급 담임교사 또는 지도강사와 상담 시간을 가지는 것을 권장

4) 체험학습

- 희망자에 한하여 운영
- 사전 답사를 통해 현장학습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 및 안전교육 실시(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 참고)
-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된 체험학습 운영
- 캠프활동은 교사 및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자체 운영하며, 위탁 운영 가능
- 1일 현장체험학습은 6시간 이내 인정



<영재 캠프활동에 결석하면 수료가 안 될 수도 있나요?>

○ 관계없습니다. 체험학습, 캠프활동과 같은 비교과 활동은 이수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교과 활동 중 80% 미만 출석할 경우 수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캠프는 꼭 1박을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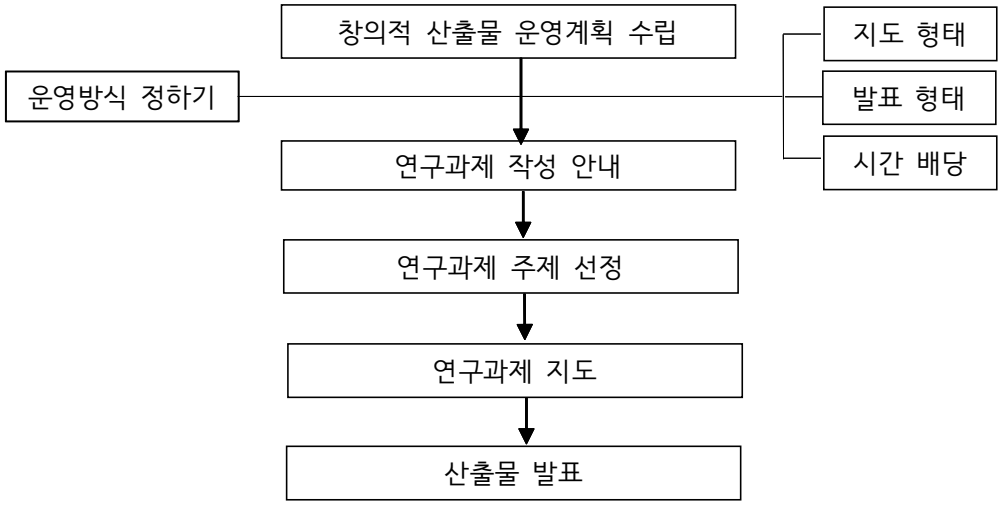
○ 캠프는 비교과 활동의 일환으로서 반드시 1박 이상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비숙박형으로 2일 혹은 3일에 나누어서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캠프로 인정되는 하루 이수시간은 최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창의적 산출물 지도

가. 프로젝트 학습 연계 산출물 지도 및 발표(예시)

1) 교과 프로젝트 학습 연계 산출물 주제 선정 후 연구활동 진행 후 보고서 작성
2) 수업 후반부에 작성한 산출물 발표

나. 창의적 산출물 지도 및 발표(예시)



다. 창의적 산출물 작성 지도방법

1) 창의적 산출물 작성에 대한 안내는 개강식(오리엔테이션) 안내 자료에 제시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연중 활동 과제로 생각하며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
2) 구체적인 예시자료로 전년도 창의력 산출물 발표 우수작 보고서와 포트폴리오, 파워포인트 파일 등을 제시하여 지도 권장
3) 팀 구성은 개인별, 또는 2~4인의 그룹으로도 가능
4) 지도강사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학생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연구의 방법과 방향을 안내하고 학생들의 연구진행 상황을 점검·지도

라. 산출물 발표회 운영 방법(예시)

1) 영재기관별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거 기관별 산출물 발표회 실시
2) 영재기관별 발표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기관별 특색에 맞게 운영
3) 다른 학생의 작품과 공유해보는 경험을 갖도록 권장
4) 영재교육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도록 배려
5) 평가 기준은 다음을 참고하여 활용하되 각 기관 특성에 따라 창의적 수정 가능

영역	평가 기준 (예시)	배점	점수	비고
자기주도성(20점)	1. 스스로 학습을 계획, 실행, 평가하였는가? 2. 팀별 연구 진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는가?	10 10		
창의성(30점)	1. 주제가 학생의 수준에 맞는 내용인가? 2. 새로운 창의적인 내용인가? 3. 결과물 제작 과정에서 창의성이 돋보이는가?	10 10 10		
문제해결력(30점)	1. 탐구과제해결방법이 합리적인가? 2. 장기간의 연구계획을 가지고 실천하였는가? 3. 문제해결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설명하였는가?	10 10 10		
발표태도(20점)	1. 발표 태도는 바른가? 2. 질문에 응답하는 태도는 바른가?	10 10		
계		100		

10 영재교육기관 설치 · 승인 신청

가. 승인 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재능계발영재학급 설치 운영계획서 제출 (학교→교육청)		경기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 (6~8월 예정)		재능계발영재학급 설치 승인 (교육청→학교)

※ 도교육청에서 차년도 영재교육기관 설치 및 운영신청 관련 공문 발송

나. 제출 대상별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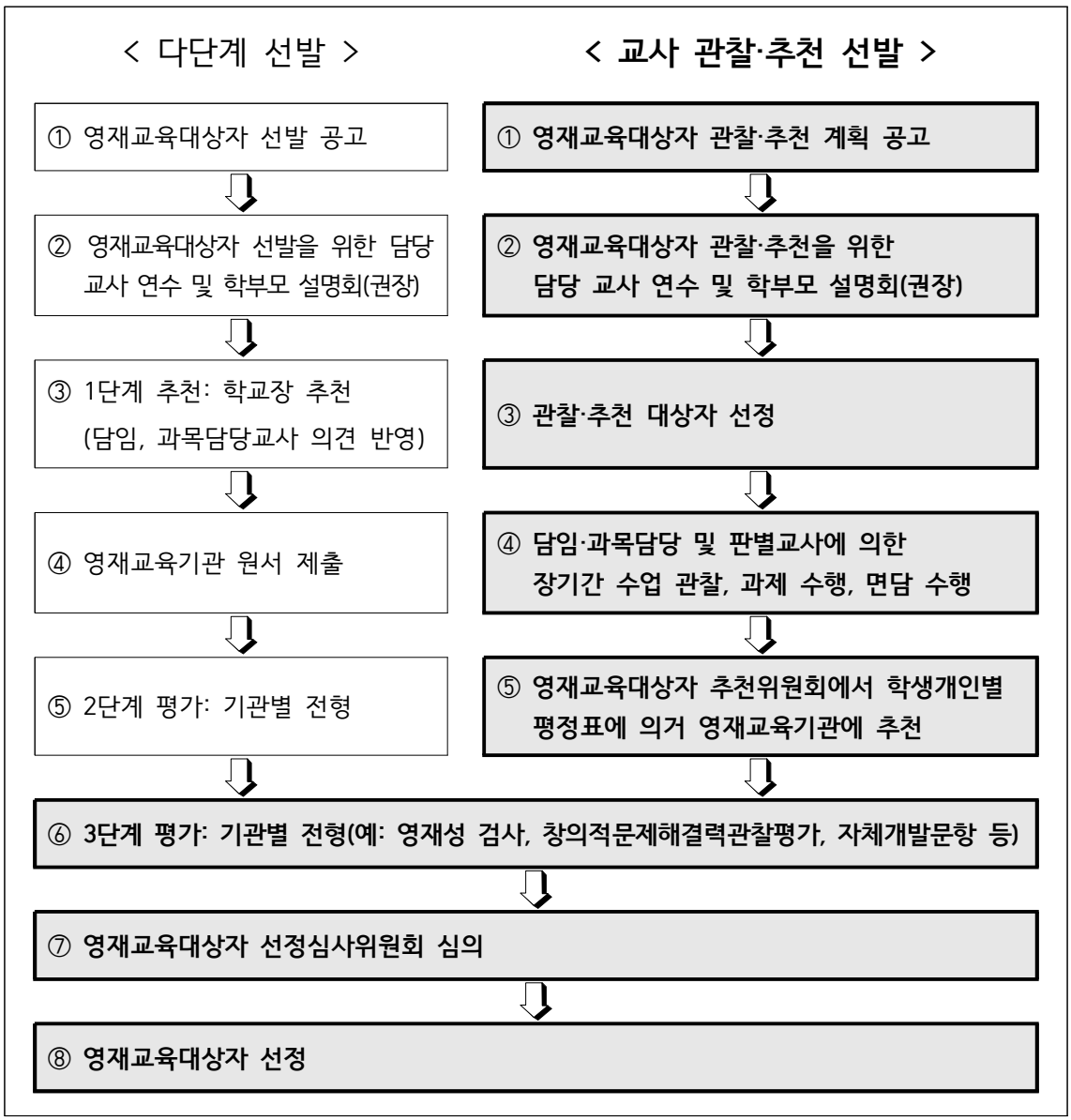
제출서류	제출대상		
	신규 운영교	기존 운영교	폐지 신청교
설치 운영 계획 요약서	○	○	
설치 운영 계획서	○		
학교장 의견서(학부모 설문 및 동의 반영)	○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해당 내용만)	○		○
영재교육기관 설치 희망 현황표(엑셀)	○	○	
학칙	○		

다. 설치 및 운영 신청 시 유의사항

1) 교육기관명에 '부설' 용어 사용하지 않음
2) 수료 조건은 교과 시수의 80% 이상 이수
3) 수익자 부담일 경우 환불 규정 명시(학칙에 명시)

11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절차

가.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절차



※ 다단계 선발: 교사관찰추천이 불가능한 경우
(예: 대학교 부설 예술영재교육원, 차년도 3월 선발을 하는 중1, 고1 재능계발영재학급)

12 영재성발달기록부

가. 지침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은 해당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영재성발달기록부)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 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 학년 말 영재교육 활동결과를 종합하여 영재성발달기록부 작성 후 진로지도, 상담활동 자료로 이용
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영재학급에서 이수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함

나. 영재성발달기록부 관리(영재교육기관)

1) 수료하는 학생에 대하여 필수 작성
2) 관리방법: GED시스템에서 다운로드(PDF파일) 후 내부결재(비공개6호, 영구열람제한)
   ※ 영재성발달기록부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 이력 연계를 위한 기관용 정보로서 학생과 학부모는 열람 불가
3) 모든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대상자 소속교로 GED시스템에서 전송
   → GED상에서 [발달기록부(1)]-[출결 및 이수관리]-[소속학교 기록제출]
   ※ 모든 영재교육기관[1]은 학기초 영재교육대상자 명단, 학년말 수료대상자 명단을 학생 소속교에 공문 발송 필수

다. 학교생활기록부(NEIS) 기록(학교)

1)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증빙자료로 필요한 경우 GED시스템 상에서 학교추천위원회 기관 아이디로 로그인 후 입력 내용 확인 가능
2) 학교생활기록부(NEIS) 기록 방법
   :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이수시간을 입력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관의 명칭은 입력하지 않고 실제 이수시간을 입력한다.**

초등	■ **[성적]-[학생평가]-[교과학습발달사항]-[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 입력 ■ 여러 교과에 해당하는 경우 학업성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중점 교과를 선정하여 하나의 교과목에만 입력함 예) 과학: 영재학급에서 1학년 과정 융합 영역(80시간) 78시간을 이수함.

1) 모든 영재교육기관은 창의융합상상소, **대학부설영재교육원**, 재능계발영재학급을 의미함.

중등	■ 중등의 경우 영재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 식별자를 전과 후로 입력** 해야하며, 이는 특기사항을 등록한 후 '학교생활기록부(NEIS)'-[학교생활기록부]-[개인별 조회]의 출력 옵션에서 '영재기록사항제외(고입용)'을 체크하여 조회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입학시험 또는 대입전형자료 생성시 영재교육 관련 생활기록부 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함임. ■ 내용이 1개 교과인 경우 **[성적]-[성적처리]-[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 입력 ■ 내용이 2개 이상 교과와 관련되는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 입력 ■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 입력 예) **<@>**영재학급에서 1학년 과정 융합 영역(110시간) 110시간을 이수함.**<@>**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발명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창의융합상상소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예시	
초등	■ 1단계 **영재교육원**에서 **2022학년도** 1단계 과정 융합 영역(22시간) 20시간을 이수함. ■ 2단계 **영재교육원**에서 **2022학년도** 2단계 과정 융합 영역(52시간) 52시간을 이수함.
중등	■ 1단계 **<@>영재교육원**에서 **2022학년도** 1단계 과정 융합 영역(22시간) 20시간을 이수함.**<@>** ■ 2단계 **<@>영재교육원**에서 **2022학년도** 2단계 과정 융합 영역(52시간) 52시간을 이수함.**<@>**

Q&A

<영재성발달기록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근거: 영재성발달기록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

○ 영재학급 설치 학교장 및 영재교육원장은 해당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의 생활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되, 해당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경기도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지침] 준수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중 학교생활기록부(NEIS)에 입력 가능한 기관은 무엇인가요?>

○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승인하여 지정한 대학부설과 경기도에서 승인한 대학부설만 입력 가능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 및 지정 기관: 아주대(과학), 동국대(과학), 대진대(과학), 가천대(과학)
- 교육부 승인 및 지정 기관: 서울여대(정보영재교육원)
- 경기도교육청 승인 및 지정 기관: 가천대(예술), 강남대(예술), 삼육대(예술), 경인교대(과학, 발명), 한국외대(수학, 언어), 서울대(융합, 지자체 예산, 시흥만 지원 가능)

<학교생활기록부(NEIS) 입력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이수시간은 총 이수시간 중 실제 이수한 시간이므로 학생별로 상이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NEIS)]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입력하지 않도록 합니다.

○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이수 시간을 입력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학교[기관]명칭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영재교육기관에서 받은 상을 학교생활기록부(NEIS)에 입력할 수 있나요?>

○ 단위학교 혹은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상은 모두 교외상이므로 학생생활기록부(NEIS)기록 지침상 모두 입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수여만 하여 주시고 학생생활기록부(NEIS)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13 수료식

가. 수료식 추진 절차(예시)

수료식 계획 (3~4주 전)	→	수료식 준비 (1~2주 전)	→	수료식 진행 (당일)
■ 계획서 내부결재 ■ 일시, 장소에 대한 공지		■ 가정통신문 배부 ■ 수료증 준비 ■ 수료식 물품 품의 ■ 장소 점검 및 준비		■ 장소 및 참석 대상 확인 ■ 방송 상태 확인 ■ 수료식

나. 세부 절차(예시)

1) 계획

- 참석 대상: 학생 및 학부모, 업무 담당 교사, 지도교사, 영재교육기관의 장
- 일시 및 장소를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정함
- 사회자는 시나리오, 시상보조는 기념품 및 수료증 확인

2) 준비 사항

구분	항목	내용
1	수료식 관련 자료 결재	수료식 시나리오, 가정통신문, 수료증 양식 및 명단 등
2	업무분장	영재지도교사별 업무 분장
3	수료 대상자 성적 사정	출석 및 이수시간, 성적 등 확인
4	가정통신문 배부	학생 및 학부모 참석 안내
5	수료증 발급대장 작성	수료 대상자 명단 확인 후 수료증 발급대장 작성 (수료증 발급대장 번호부여는 각 학교에서 자체 생산)
6	수료증 및 기념품 준비	수료증, 기념품 준비
7	장소 점검 및 준비	현수막, 수료식 식순, 마이크 및 오디오 점검
8	등록부 준비	참석자 명단 확인 후 수료식 당일 비치

3) 수료식 진행 순서

■ 수료식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1년의 영재학급 운영 보고

■ 영재학급 학생의 수료증 수여

구분	진행 내용	담당자
1	개회사	사회자
2	국민의례	사회자
3	영재학급 연혁 보고	교감
4	수료증 수여	학교장
5	학교장 말씀	학교장
6	학생 소감 발표	각 영재학급 학생 대표
7	폐회사	사회자



<영재교육대상자의 수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 영재교육대상자의 수료 기준은 교과시수의 80% 이상입니다. 간혹 총 시수의 80%로 이해하여 수료 대상자를 잘못 선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교과시수 72시간인 영재학급에서 58시간 이수한 학생 ➜ 이수
  교과시수 80시간인 영재학급에서 63시간 이수한 학생 ➜ 미이수
  총 시수 88시간(교과 80시간 + 비교과 8시간)인 영재학급에서 교과 63시간, 비교과 8시간 이수한 학생 ➜ 교과 80시간의 80% 이상인 64시간이 아니므로 미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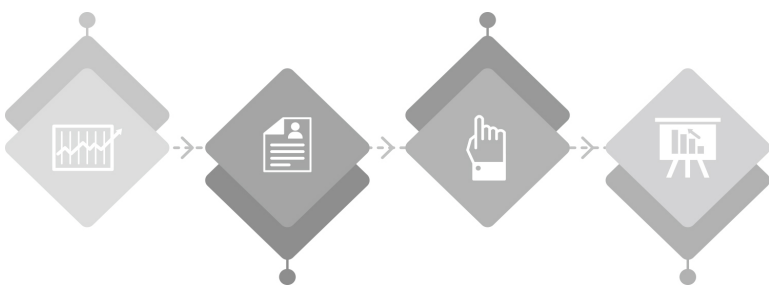
<영재교육대상자의 수료증 발급번호는 어떻게 생성하나요?>

○ 각 영재학급별 수료증 발급번호는 각 학교별 고유번호를 생성하여 부여하도록 합니다.

- 예) 2022학년도 ○○초 재능계발영재학급 수료증 발급번호 생성시
  년도-기관명(학교)-수료번호 순으로 합니다. (2022-○○초-001)

III

영재교육원 운영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Ⅲ 영재교육원 운영

1 (창의융합상상소) 연간 계획 수립

월	주요 사업	필수	권장	관련 페이지
1~2	1단계 프로그램 개발	●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단계 선발(3월) 계획 수립 및 공고	●		
3	1단계 영재교육대상자 추첨 선발 및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보고	●		45
	연간운영계획 수립	●		49, 126
4~7	개강식 및 학부모, 학생 오리엔테이션(온라인 운영 가능)	●		28, 73
	1단계 교육과정 운영	●		
	GED 영재성발달기록부 환경 설정 및 작성	●		37, 57
	학부모 대상 수업공개 (온라인 운영 가능)		●	
	차년도 영재교육기관 설치·승인 신청	●		35, 98
	GED 통계 입력	●		55
	포트폴리오 발표		●	
8	1단계 이수학생 이수결과 처리 및 영재성발달기록부 기재	●		68
	2단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46
	2단계 세부운영계획 수립	●		
8~11	2단계 교육과정 운영	●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 및 수료식(온라인 운영 가능)	●		33, 40
12	3단계 사사과정 대상자 교사 추천	●		
	2단계 이수학생 이수결과 처리 및 영재성발달기록부 기재	●		68
	차년도 지도교사 공모 및 선정	●		48
	GED 영재성발달기록부 내부결재 및 송부	●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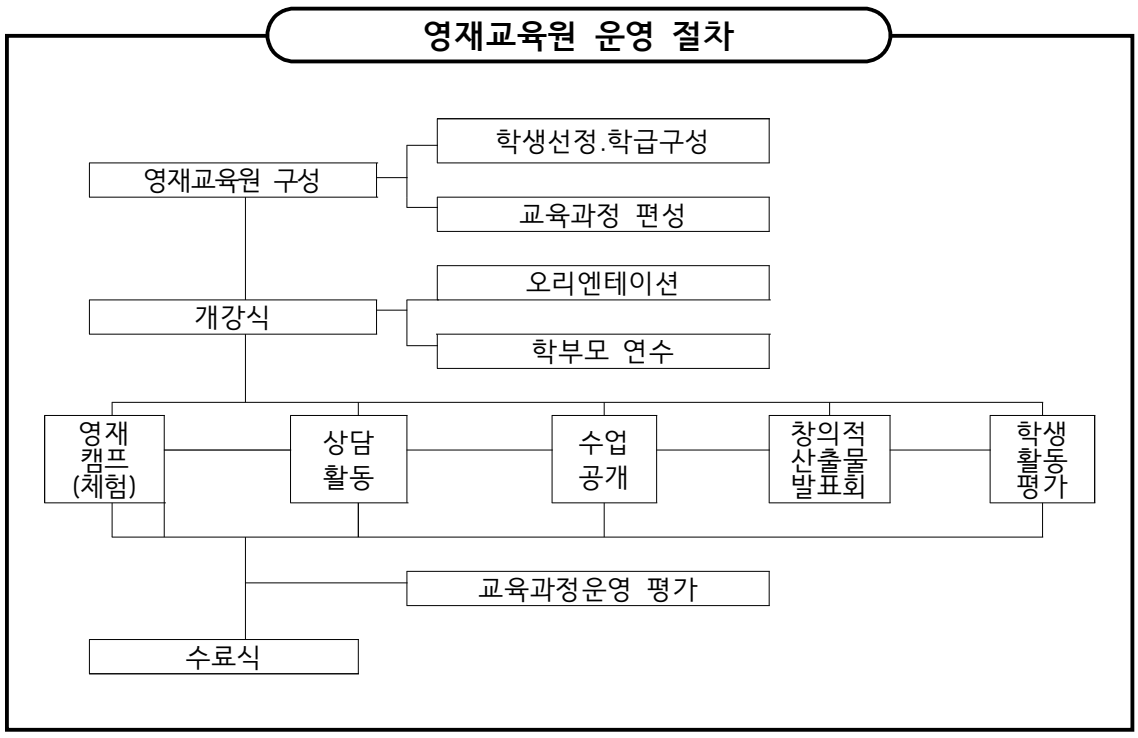
※ 각 자세한 세부 일정은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공문 확인

※ 위 일정은 영재교육기관별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대학부설영재교육원은 자체 계획에 따라 운영**

※ 1단계: 예비과정, 2단계: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3단계: 사사과정(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운영)

2 영재교육원 운영 개요

가. 운영 절차도



나. 운영 조직

1) 영재교육원에는 원장, 영재교육 담당장학사, 영재교육원 전담교사 및 각 교과별 담당 지도교사로 조직 운영한다.
2) 원장은 교육장이 겸임하며, 영재교육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3) 영재교육원에서는 반드시 15인 이내의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두며, 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받아 운영한다.

다.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1) 모든 영재교육기관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운영하여야 함
2)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을 기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
   예) 간사: 영재담당 장학사, 서기: 영재전담교사 등
3) 위원 임기: 3년(3회 이내 연임 가능), 교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 재직기간 동안
4)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5) 심의 결과는 기관장(교육장 및 원장) 내부결재 필수

라. 창의융합상상소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개요

1단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1) GED를 통해 예비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
2)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배석하고 위원장이 추첨
3) 선정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교육대상자를 선정 후 합격자 발표

2단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1) 2단계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최대한 기회를 제공하되, 대상자 초과시에는 1단계 이수자 중 성장중심 평가 후, 불성실 이수자를 포함하여 성취수준이 기준 이하인 자를 제외한 후 추첨 등으로 선정한다.
2) 선정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교육대상자를 확정한 후 합격자에게 통보

3단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1) 1, 2단계 과정을 모두 수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내 영재 지도강사 협의회에서 추천된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주관 사사과정판별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함
2) 사사과정 영재교육대상자는 희망하는 연구영역을 지도할 전문가와 함께 일대일 매칭으로 1년 과정의 연구과제를 수행함

3 영재교육원 설치·운영 현황(2022)

가. 창의융합상상소

권역	기관	운영 학년
1	고양, 광명, 김포, 부천, 파주	초3,4 통합 초5,6 통합 중1,2,3 통합 (무학년제 운영)
2	가평,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연천, 의정부, 포천	
3	군포·의왕, 수원, 시흥, 안산, 안양·과천, 화성·오산, 평택	
4	광주·하남, 성남, 안성, 양평, 여주, 용인, 이천	
5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 권역 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은 경기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함

나.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대학명	운영과정	운영 학년	운영학급수
경인교대(안양)	과학	초3,4학년: 1반, 초5,6학년: 2반 , 초6학년: 1반, 중1,2학년 : 1반, 중2,3학년: 1반	6
	발명	초5학년: 1반, 초6학년: 1반	2
한국외대(용인)	수학	초56 통합: 1반	1
	언어(영어)	초4: 1반, 초5,6통합: 1반, 중1,2통합: 1반	3
가천대(성남)	예술(음악, 미술)	음악: 6반, 미술: 4반(초456, 중123통합)	10
강남대(용인)	예술(음악)	음악 초등 2반, 중등 2반	4
서울대(시흥)	융합	중3: 3반 고12통합: 3반	6
삼육대(남양주)	예술(음악)	초: 1반, 중고: 1반(학년무관)	2*

* 삼육대 영재교육원은 조건부 승인으로, 지자체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추후 안내 예정

Q&A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중 경기도교육청 외 승인을 받은 기관은 어디인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 및 지정 기관: 아주대(수원/과학), 동국대(고양/과학), 대진대(포천/과학), 가천대(성남/과학)
- 교육부 승인 및 지정 기관: 서울여대(정보영재교육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 기관은 경기도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 제한되어 지원가능하고, 교육부 승인 기관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이 지원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바랍니다.

4 영재교육 지도강사 선정

가. 선발 절차

순서	주요 내용	비고	시기
1	강사 수요 산정	규모와 교육과정을 고려	전년도 12월
2	강사 선발 공문 발송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홈페이지 공고) 소정의 영재교육 관련 직무 연수 이수자 연수를 이수하지 않고 선발된 자는 해당년도 안에 반드시 연수 이수	1월 ~2월
3	강사 선발	공정한 절차에 의한 선발 강사 모집 계획은 각 영재교육기관의 별도 계획에 의함	
4	지도강사 워크샵 개최	교육과정 및 수업 시수 조정 담임교사 선정 협의	

나. 강사 선정 자격(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

1) 초·중등교육법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2)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나 영재교육원에서 담당예정인 영재교육분야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자
3)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영재교육원 강사 선발 방법

1)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소정의 영재교육 관련 직무 연수(원격 연수)를 이수한 자 또는 1년 이내 이수 가능한 교사 중 희망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
2)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경우는 소정의 직무연수도 이수 가능함
3) **영재교육원 지도강사 선발은 각 교육지원청 별도 계획에 의해 추진함**

5 예산 편성 및 운영

영재교육원 운영경비(예시)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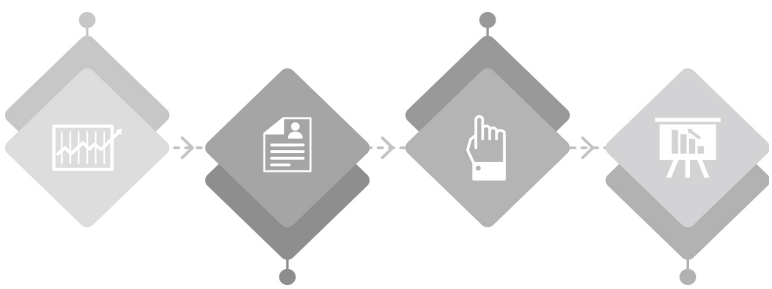
연번	사업내용	산출근거	예산액	비고
1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			도교육청 지원예산
2	강사수당			
3	교구·기자재			
4	특색수업(진로캠프)			
5	영재교육대상자 추첨			
6	수료식			
7	재능계발영재학급 컨설팅 운영			
8	영재교육원 재료 및 소모품 구입			자체예산
9	영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10	리더십활동			
11	현장체험학습			
12	지도강사 전문성 신장			
13	창의적 산출물 발표			
14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15	지도강사 연수			
16	학생 특강			
합 계				

※ 예산 편성 및 운영은 각 교육지원청 별도 계획에 의해 추진함

※ 교구 및 준비물, 개강식,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창의적 산출물, 영재교육기관 설치 승인 신청, 영재교육대상자 선발계획, 평가 및 영재성발달기록부 기록, 수료식, GED 선발 시스템의 이해 부분은 [재능계발영재학급 운영]부분을 참고하여 각 교육지원청별 자체 계획 수립

Ⅳ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GED)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Ⅳ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

※ 본 내용은 GED활용에 대한 기본 안내 사항이며, 자세한 사항은 GED홈페이지 매뉴얼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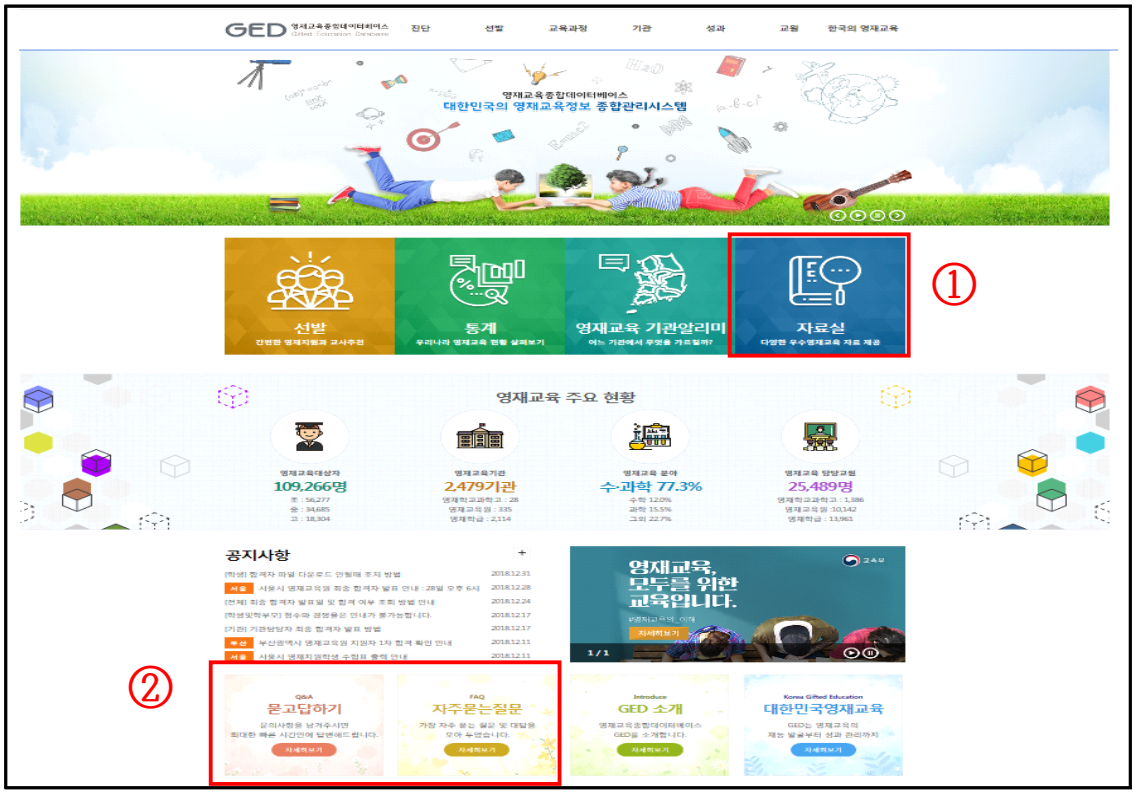
1 GED 시스템

가. 개요



① **선발**: 지원-추천-심사-선발의 교사 관찰·추천 선발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표준 영재교육 선발시스템
② **통계**: 우리나라 영재교육 현황 통계
③ 영재교육 기관알리미: 전국에 있는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④ 자료실: 영재교육 우수 교수학습자료 경진대회와 좋은 수업 공모전 자료 게시
⑤ **영재성발달기록부**: 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기반의 마련을 위하여 학생별 발달 과정 기록

나. GED 시스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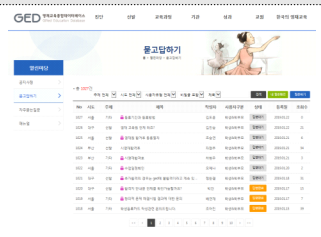


① 자료실



교수학습자료, 연구보고서, 운영계획서, 업무편람 매뉴얼, 평가컨설팅, 홍보자료 등 영재교육관련 다양한 실무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

② 묻고 답하기, 자주묻는질문



GED 시스템 활용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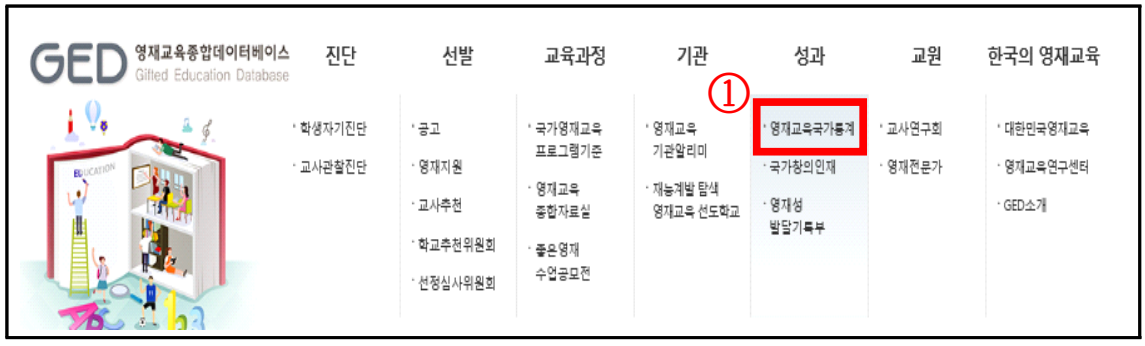
2 GED 통계입력

가. 업무 개요

단계	주요 업무	
도교육청 지역청	■ 기관별 고유계정 안내	- 계정 확인 및 입력기관(영재교육원, 재능계발영재학급, 영재학교, 과학고) 계정 배포
↓		
영재업무 담당교사	■ 영재교육기관 통계 입력	- 고유계정으로 접속하여 GED 정보 입력
↓		
지역청	■ 통계 내용 확인	- 관할 영재교육기관 입력정보 확인 및 제출

나. 영재교육기관 통계정보 등록 입력 가이드

1) GED 홈페이지 접속(http://ged.kedi.re.kr) 접속



2) 영재교육국가통계 버튼 클릭→교육기관 통계입력 버튼 클릭→기관정보, 운영현황, 운영자료, 학급정보, 학생정보, 교원정보 순서대로 각각 내용을 입력 후 저장버튼 클릭→통계확인 버튼 클릭 후 알리미등록



3 GED 선발시스템

가. 업무 개요

단계	주요 업무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심사 위원회	■ 선발계획수립 ■ GED 선발환경설정 ■ 선발계획 공지	- 시스템 접속 및 계정 관리 - 선발공고, 모집과정 관리 - 학생용, 교사용 검사지 등록 - 반영비율관리 - 안내문 관리
↓		
학생	■ 온라인 지원서 작성 ■ 선생님에게 추천을 의뢰	
↓		
교원	■ 학생 관찰 ■ 학생의 추천서 작성 ■ 학생 추천	
↓		
학추위	■ 학생 심사 및 추천	
↓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심사 위원회	■ 학생 심사 ■ 학생 선발 ■ 합격자 공고	- 지원학생목록 - 추천서 통합·반려 - 수험번호생성 - 점수일괄입력 - 추천서심사 - 검사지 출력 - 최종합격목록

나. GED선발시스템 활용



1단계	→	2단계 - ①	→	3단계 - ②
■ GED 홈페이지 접속 (https://ged.kedi.re.kr)		■ 학생, 교사 등 각각의 고유 권한으로 로그인		■ '매뉴얼보기/다운로드' 활용

4 영재성발달기록부 작성

가. 업무 개요(영재성발달기록부 관리 흐름)

단계	주요 업무	
도교육청 지역청	■ 기관별 고유계정 안내	- 계정 확인 및 입력기관(영재교육원, 재능계발영재학급, 영재학교, 과학고) 계정 배포 (예) 통계입력용 아이디가 10101012019일 경우, 영재성발달기록부관리자 아이디는 S10101012019
↓		
영재업무 담당교사	■ 영재교육기관 관리자 접속 ■ 담당자 정보 등록 ■ 영재성발달기록부 운영	- 고유계정(영재성발달기록부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담당자 등록 - (신규기관)영재성발달기록부 운영여부를 등록 - 운영할 학급을 등록
↓		
지도강사	■ 교강사 등록 신청	
↓		
영재업무 담당교사	■ 교강사 등록신청 승인 ■ 학급별 프로그램 등록 ■ 학급별 학생 등록	- 학급별 담당 프로그램 표 및 세부 내용 등록
↓		
지도강사	■ 영재성발달기록부 운영	- 학생별 발달기록부 작성

〈영재성발달기록부 관리 절차〉

관리자 등록		1	관리자 계정(ID/PW) 수령
		⇩	
		2	관리자 정보 등록
		⇩	
사전 설정	발달 기록부(Ⅰ)	3	학급등록
		⇩	
		4	교강사 등록
		⇩	
		5	학생 등록-학적 등록
		⇩	
연중 작성		6	출석부 및 발달기록부(Ⅱ)
		⇩	
마무리		7	출결 및 이수관리-종합의견 작성
		⇩	
학교 전송		8	이수결과 소속학교 전송

〈영재교육기관 관리자 운영절차(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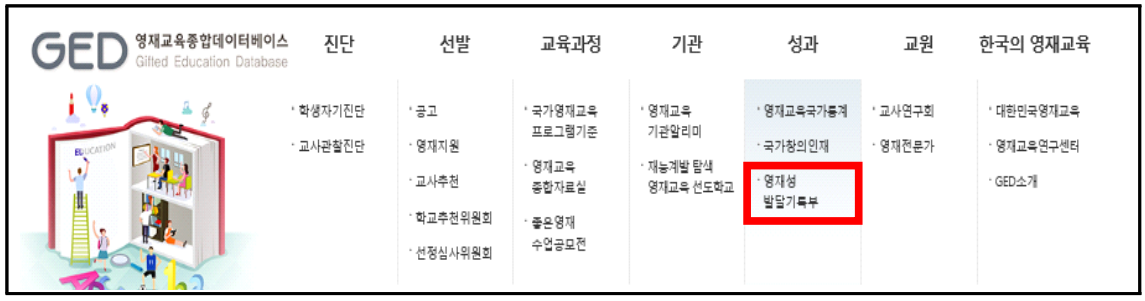
단계	업무명	주요업무	시기
관리자 등록	관리자계정 수령	- **선정심사위원회 관리자 계정 수령** * 교육청에서 일차 배포, 미수령 또는 패스워드 분실 시 KEDI 문의	개강 전
	관리자 정보 등록	- **발달기록부 시스템 운영 담당 관리자 정보 등록** * GED 관리자 로그인 - 정보변경	개강 전
환경 설정	학급 등록	-**2022 운영 학급 정보 등록** * 발달기록부 환경 설정 - 학급 관리	개강 전
	교강사 등록 안내	- **GED 교강사 등록 신청 방법 안내** * 발달기록부 - 교강사 등록 신청 * **전년도 신청교원은 재신청 불필요**	교강사 선임 직후
	교강사 승인	- **등록 신청한 교강사 승인 및 담당 학급 배정** * 발달기록부 환경 설정 - 교강사 관리	교강사 등록 신청 완료 후
	프로그램 등록	- **연간 프로그램 편성표(계획) 등록** * 관리자와 학급을 배정받은 교강사 모두 등록 가능	교강사 학급배정 완료 후
학생 등록	GED로 선발한 기관	- **전년도 모집과정에서 학생 정보 이관** * 발달기록부 환경 설정 - 발달기록부(학생별) - 학생 등록	개강 전 또는 개강 직후
	GED로 선발하지 않은 기관	- **학생 GED 회원가입 및 영재성발달기록부 등록 신청 안내** * 신청할 학급 코드와 안내문 배포	개강 전 또는 개강 직후
		- **등록 신청 승인** * 발달기록부 환경 설정 - 발달기록부(학생별) - 학생 등록	학생 등록 신청 완료 후
	연계과정 운영 기관	- **작년도에 동일기관 영재성발달기록부에 등록되었던 학생은 새 학년도로 이관 등록** * 선발이나 신청이 아닌 새 등록 방식(2020년 추가)	
연중 기록	학적 사항	- **학생 원 소속학교 정보 입력**	학생 학급 배정 완료 후
	출결 사항	- **차시별 학생 출결 사항 기록** * 발달기록부(항목별) - 출석부 활용	매 차시
	관찰발달기록	- **학생별 관찰 발달 사항 기록** * 기록 주기는 교육청 또는 기관별로 자율	자율
	평가	- **학생 평가 결과 기록** * 평점, 등급, 점수 등 평가의 산출 결과	매 평가 후
	산출물	- **학생 산출물 자료 등록** * 창의적산출물 자료, 보고서 등 학생 생산 자료	산출물 생산 후
	수상경력	- **수상 실적 기록** * 영재교육기관 내에서 수상한 실적만 기록	상장 수여 후
	진로희망	- **진로 희망 및 사유 기록**	상담 후
기록 종료	영재성관찰 종합의견	- **학생 관찰 결과에 근거한 종합 의견 작성**	학년도 말
	출결 및 이수	- **연간 출결 종합 작성 및 이수·미이수 처리**	학년도 말
학교 전송	출결 및 이수	- **학생의 소속학교로 이수결과 및 발달기록부(Ⅰ) 전송**	수료 후

〈영재교육 교강사 운영절차(상세)〉

단계	업무명	주요업무	시기
신청	교강사 등록신청	- **담당할 영재교육 기관에 등록 신청** * 회원가입 - 발달기록부 - 교강사등록신청 * 전년도 신청 교원은 재신청 불필요	등록 신청 안내 직후
프로그램 등록	프로그램 등록	- **배정받은 학급의 연간 프로그램 편성 계획 등록**	등록 승인 직후 및 상시
발달 기록	출결사항	- **차시별 학생 출결 사항 기록** * 발달기록부(항목별) - 출석부 활용	매 차시
	관찰·발달 기록	- **학생별 관찰 발달 사항 기록** * 기록 주기는 교육청 또는 기관별로 자율	자율

나. 영재성발달기록부 운영

1) 영재교육기관 관리지 접속: GED 홈페이지 접속(https://ged.kedi.re.kr) 접속하여 영재성발달기록부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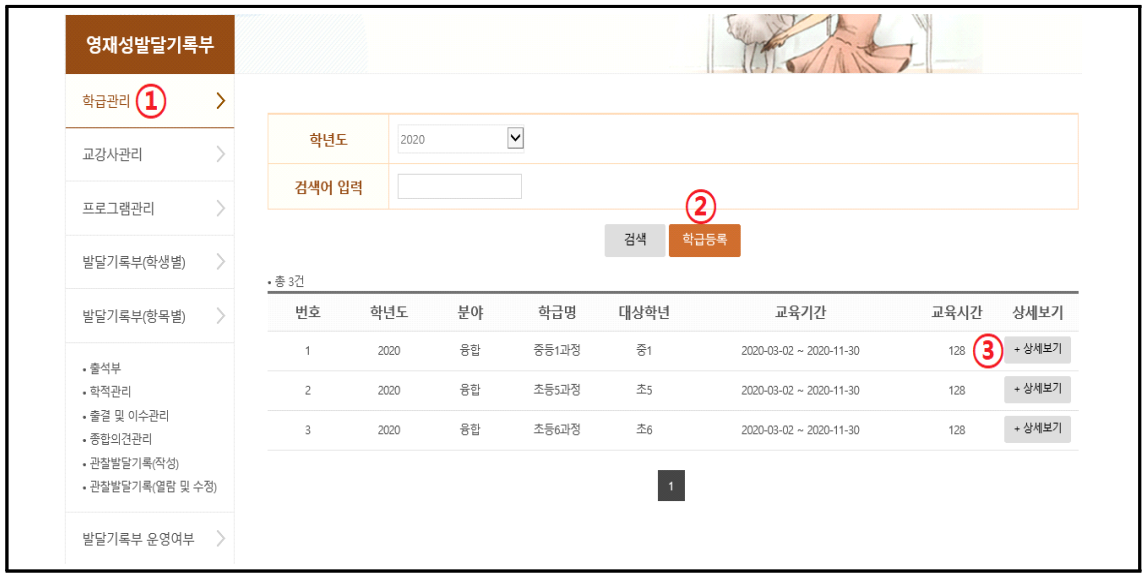
2) 담당자 정보 등록: 정보변경 클릭 후 본인인증을 받아 담당자 정보 등록



3) 영재성발달기록부 운영

■ **영재성발달기록부 운영 여부 등록**: 신규영재교육기관은 영재성발달기록부 환경설정 최초 클릭하여 운영설정화면에서 운영시작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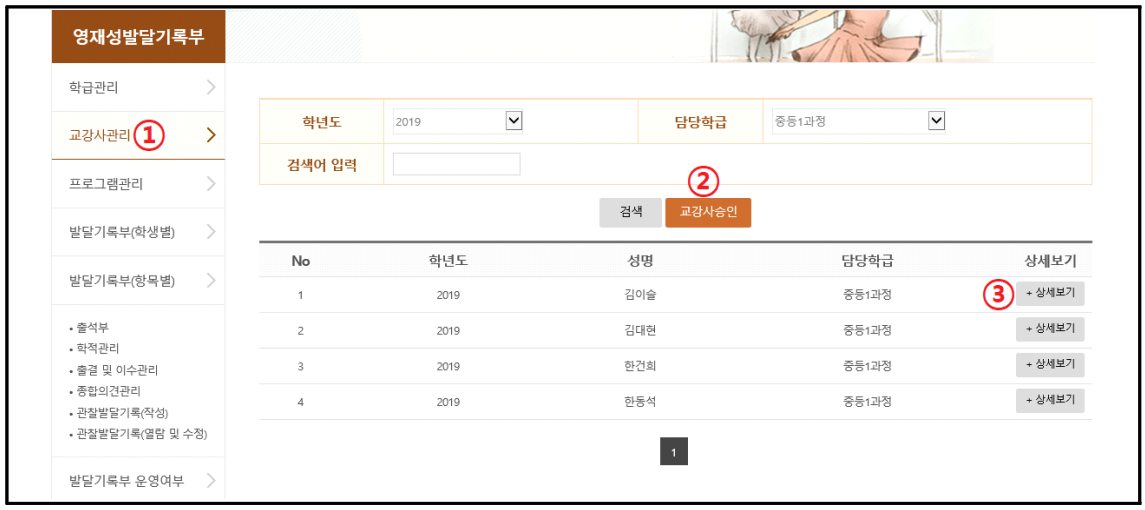
■ **학급관리**: 학급등록 후 상세내용을 입력(학급코드는 영재성발달기록부 등록 신청 시 사용하므로 학급마다 고유번호 있음)





■ **교강사 관리**: 영재성발달기록부를 작성할 교강사를 관리

※ 교강사 관리는 관리자가 일괄 작성시 교강사 등록 불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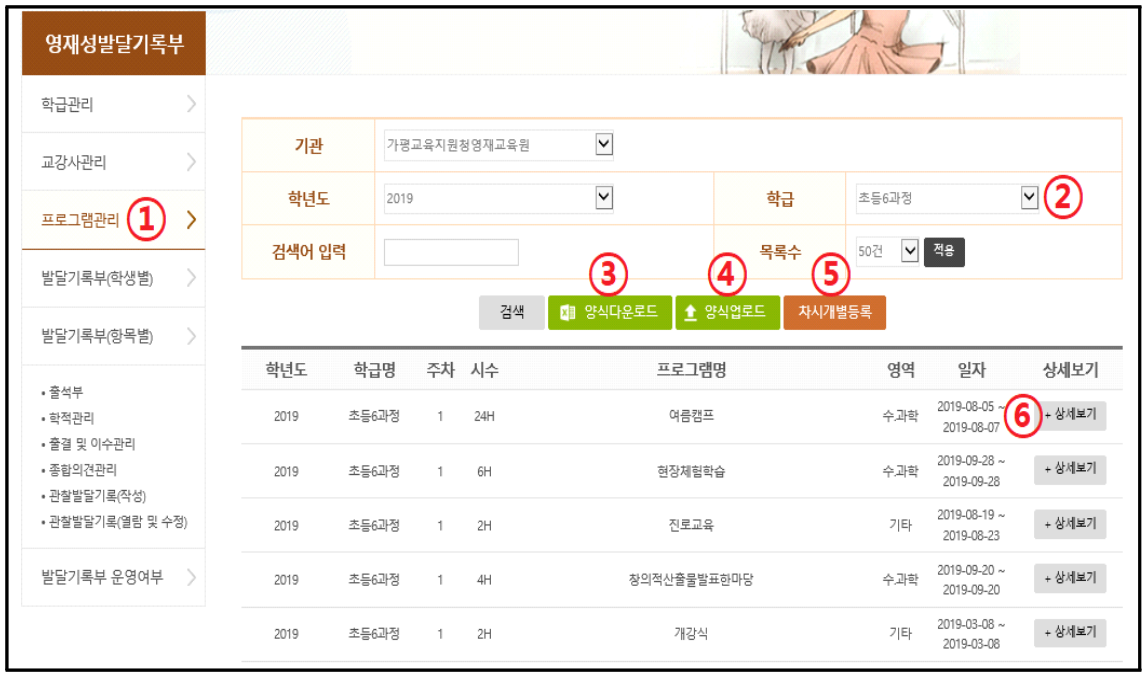




■ **영재성발달기록부 교강사 등록 신청**: 지도강사는 교원으로 회원가입한 후 교사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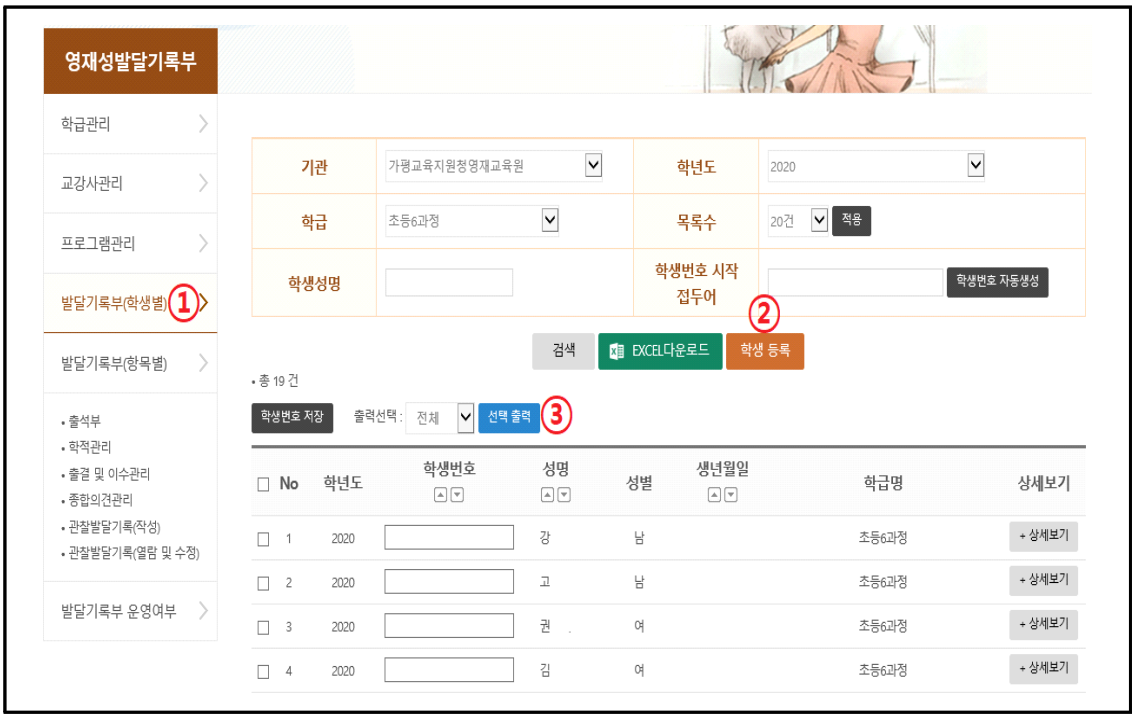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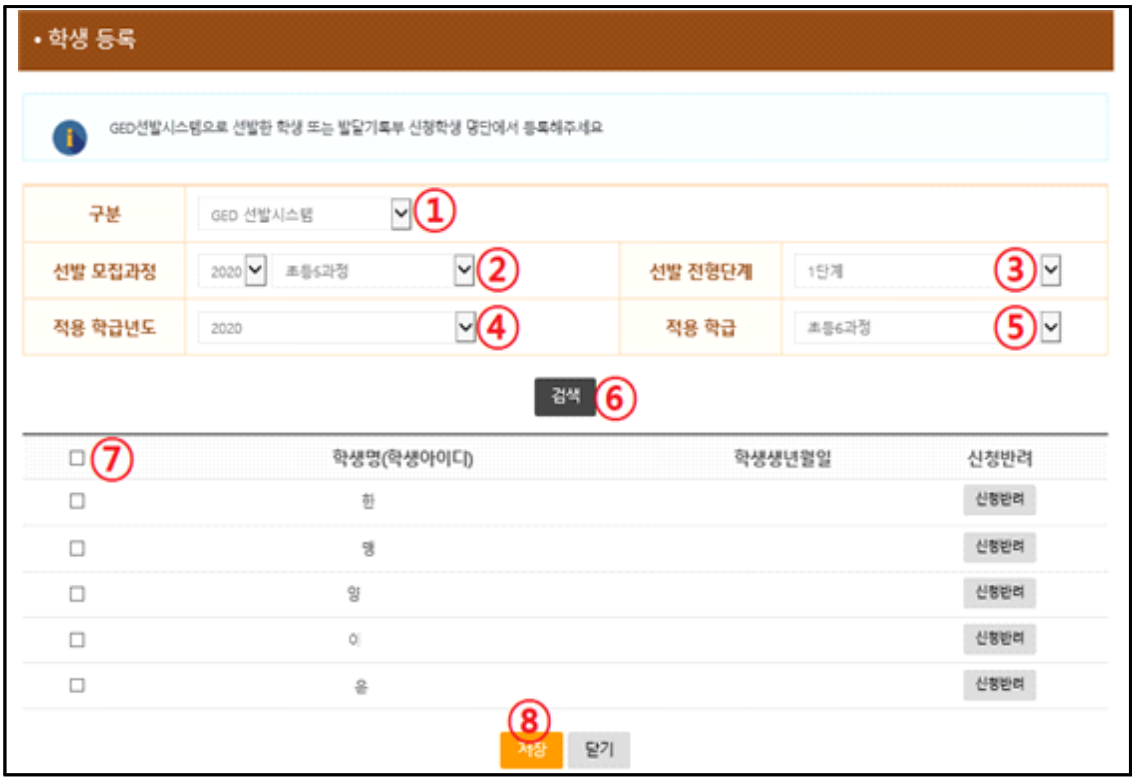
■ **프로그램 관리**: 학생이 이수할 프로그램의 세부 차시별 내용을 등록**(관리자, 교강사 모두 등록 가능함)**





■ 영재성발달기록부(학생별): 학생등록,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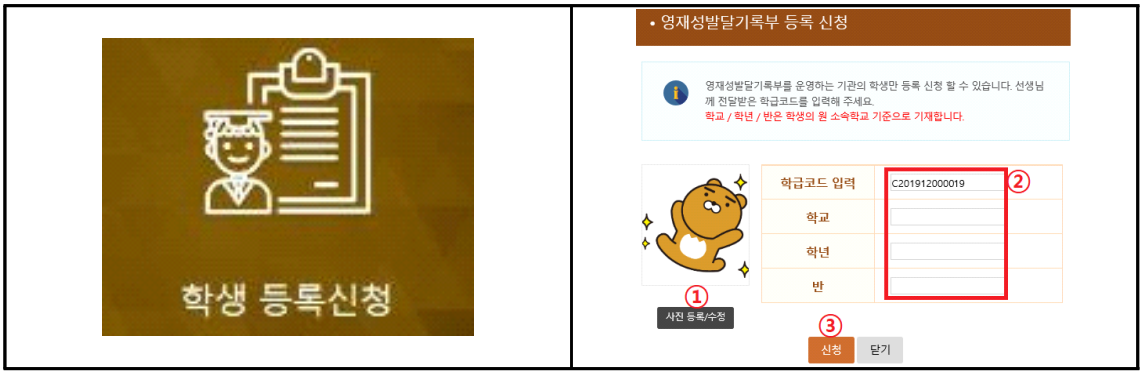


※ 자동진급, 중복가입 등의 이유로 선발시스템에서 학생 누락되어 수기입력이 필요한 경우
단, 이 경우 아래와 같이 학생이 등록신청을 해야 함



■ 선발시스템 누락 시 학생 등록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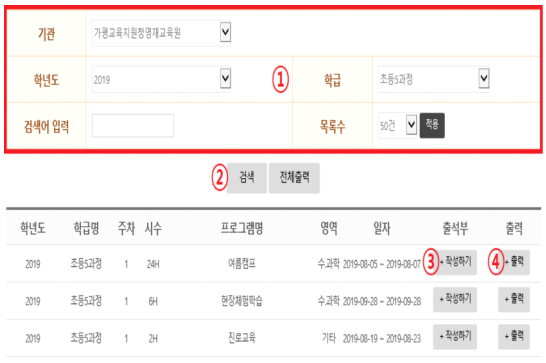
- 해당 기관은 학급코드를 받아 학생 등록신청을 클릭하여 학급코드 입력하여 신청 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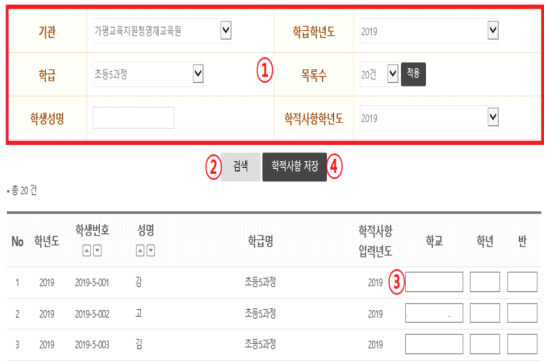


■ 영재성발달기록부(항목별): 출석부, 학적관리, 출결 및 이수관리, 종합의견관리, 관찰발달기록(작성), 관찰발달기록(열람 및 수정)

출석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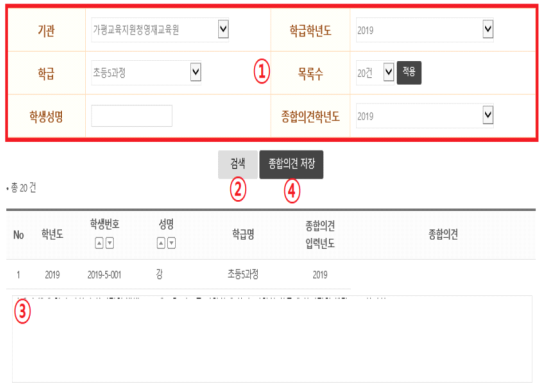
학적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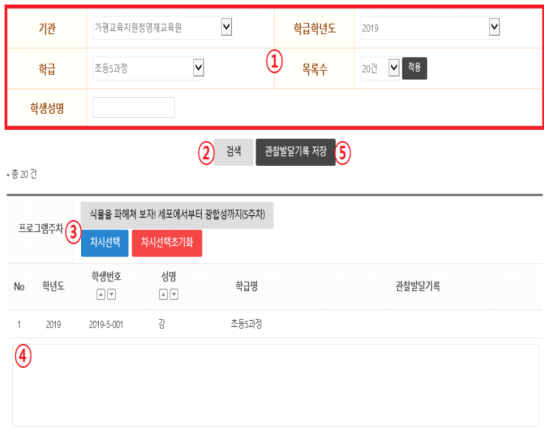
출결 및 이수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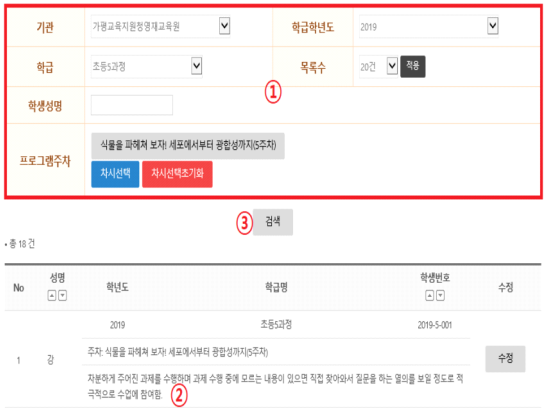
종합의견관리



관찰발달기록(작성)



관찰발달기록(열람 및 수정)



■ 교육부 GED시스템 상 영재성발달기록부

필수입력(① 학적사항 ② 출결사항 ③ 종합의견)

선택입력(④ 관찰·발달기록 ⑤ 평가 ⑥ 산출물 ⑦ 수상경력 ⑧ 진로희망사항)로 구분

cf. **경기도교육청 권장 입력 사항**

① 학적사항 ② 출결사항 ③ 종합의견 ④ **관찰·발달기록** ⑥ **산출물**

※ 종합의견 작성 시 학생의 잠재적 성장가능성에 입각해 입력하고, 부정적인 표현 지양

■ 소속학교로 영재성발달 기록부 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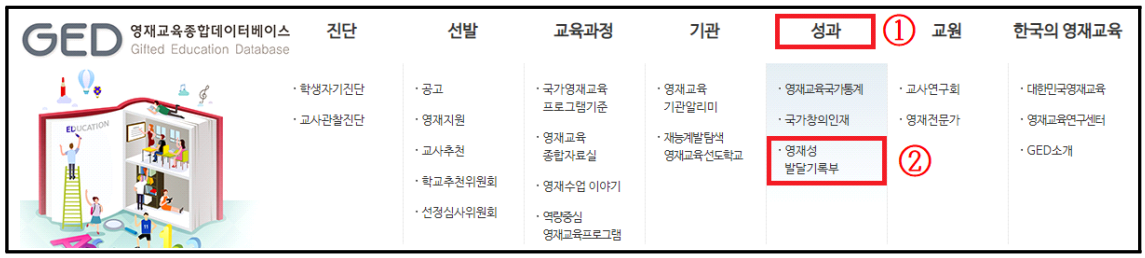
■ 학교 담당자 이수 결과 확인 방법

○ **학생 소속 학교의 담당자가 학교추천위원회 계정으로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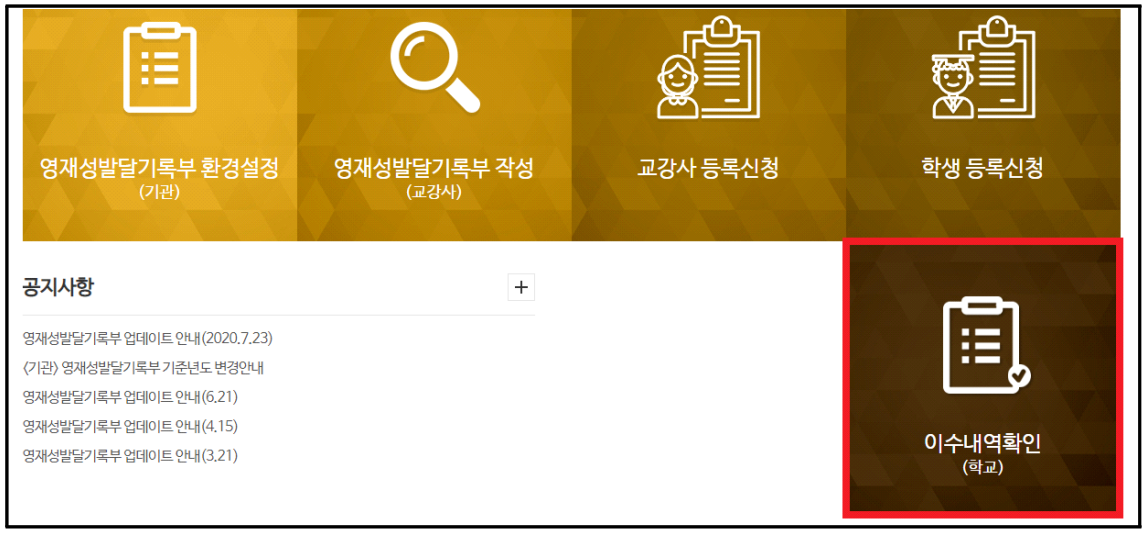
※ " C + 학교NEIS코드" 로 된 학교고유 아이디로 로그인

※ 학교추천위원회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분실한 경우 GED에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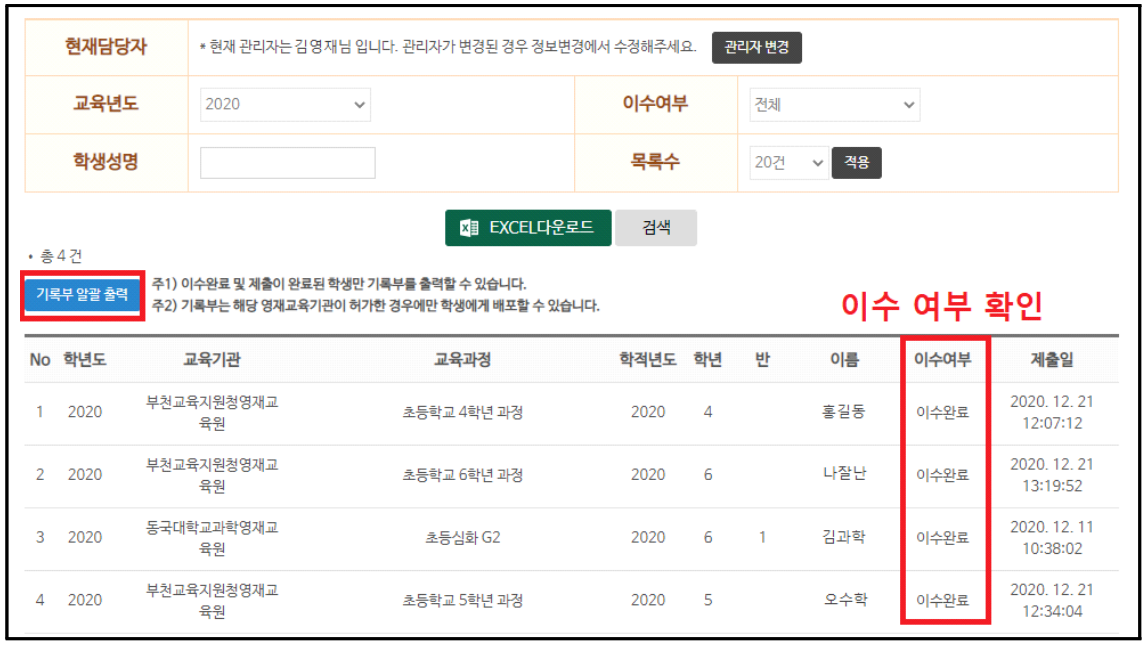
○ 【성과】→【영재성발달기록부】 클릭



○ **이수내역 확인(학교) 클릭**



○ **우리학교 학생의 영재교육 이수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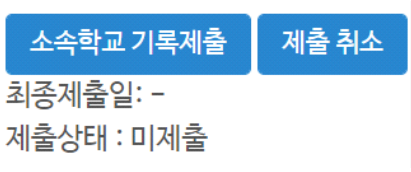
Q&A

〈영재성발달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 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영재성발달기록부는 영재교육대상자의 생활기록부를 전산으로 관리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재교육기관에서 GED시스템상으로 소속학교에 영재성발달기록부를 전송해야 하며, 학생 소속교에서는 학교추천위원회 계정을 통해 영재성발달기록부의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규기능<학교제출 기능 추가. 2020.12.2.>

▶출결 및 이수관리에 **소속학교 기록제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소속학교 기록제출**을 클릭하시면 학생의 최종 **이수/미이수 여부**와 **발달기록부(Ⅰ)**을 해당 소속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발달기록부(Ⅱ)는 학교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영재성발달기록부의 모든 항목을 작성해야 하나요?〉

○ **경기도교육청 권장 사항**

필수	선택
①학적사항, ②출결사항, ③종합의견 **④관찰·발달기록, ⑥산출물**	⑤평가, ⑦수상경력, ⑧진로희망사항

[주요 FAQ 모음]

Q1) 학생의 소속 학교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 발달기록부(Ⅰ)의 학적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소속학교 코드가 없다고 제출이 안됩니다.

☞ 학적관리에서 학교코드까지 입력되어야 제출이 됩니다.

Q3) 소속학교가 잘못된 상태에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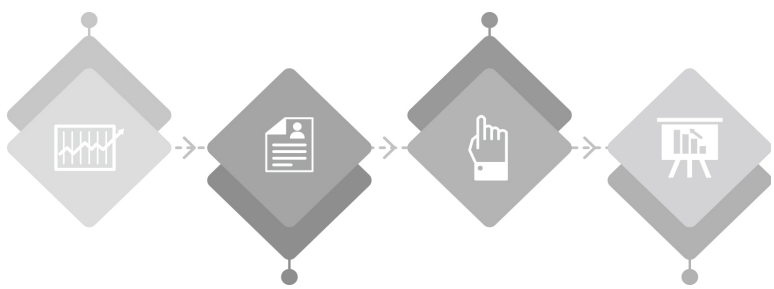
☞ 학적관리에서 수정하시면 즉시 새 학교로 제출됩니다.

Q4) 출결이나 이수여부가 틀린 상태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 제출취소를 클릭하고 수정하신 후 다시 기록제출을 눌러주세요.

V

각종 관련 서식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V

각종 관련 서식

1 개강식, 수료식 서식

■ 개강식 안내장(예시)

가 정 통 신 문

-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개강식 안내 -

자랑스러운 자녀의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22학년도 개강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영재교육 대상 학생들과 함께 학부모님들께서도 참석하시어 ○○○○년 첫발을 내딛는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재능계발영재학급에서는 영재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 지도강사 및 모든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성원을 바라며, 가정에 평안함과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1. 행사명: 2022학년도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개강식
2. 일 시: 2022년 ○월 ○○일(목) 오후 4시(3시 40분까지 입실)
3. 장 소: ○○학교 다목적실
4. 개강식 주요 일정
   가. 영재학급 입학 허가 선언
   나. 학교장 인사 말씀
   다. 영재학급 지도 강사 소개
   라. 영재학급 연간활동 관련 안내
   마. 학부모 연수 및 영재교육 대상자 오리엔테이션
   바. 특강
5. 문 의: ☎(031)○○○-○○○○
6. 안내사항:

년 월 일

○○학교장

■ 위촉장(예시)

제 ○○ - 호

위 촉 장

소 속 ○ ○ 학 교
직 위 교사
성 명 ○ ○ ○

귀하를 2022학년도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지도강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2022.3.1. ~ 2022.2.28.)

년 월 일

○ ○ 학 교 장 직인

■ 개강식 시나리오(예시)

개강식 시나리오

1. 개식사

지금부터 2022학년도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개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 국민의례

국민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민의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입학허가 선언

다음은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입학허가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입학허가 선언 >

2022학년도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로 ○○학교 ○학년 ○○○ 외 19명의 입학을 허가합니다.

2022 년 ○○월 ○○일 ○○학교장 ○○○

4. 입학선서

다음은 입학생을 대표하여 ○○초등학교 ○학년 ○○○학생의 입학선서가 있겠습니다.

< 입학선서 >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에 입학하는 저희 20명 학생 일동은 학칙을 준수하고 영재학급 학생으로서의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성실히 학업에 정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월 ○○일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입학생 대표 ○○○

5. 학교장 말씀

이어서 본교 교장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차렷, 교장 선생님께 경례.

6. 지도강사 소개

다음은 본 영재학급 지도강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강사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강사님들께 좋은 강의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7. 폐식사

이상으로 2022 학년도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개강식을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립니다. 개강식 후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연간운영계획 안내 후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들께서 오리엔테이션을, 학부모님들은 이곳 시청각실에서 영재교육의 이해와 방법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연간운영계획에 관한 설명 후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 수료식 시나리오(예시)

수료식 시나리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수료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각자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 또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1. 개식사

지금부터 2022학년도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학부모, 학생 여러분은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가연주 경례곡)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재학급 연혁 보고

다음은 2022학년도 ○○학교 재능계발영재학급의 운영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4월 ○ ○ 영재학급 개강식
- 5월 ○ ○ '○ ○ ○' 현장체험학습 실시
- 6월 ○ ○ 영재학급 수업 공개
- 10월 ○ ○ '○ ○ ○' 영재학급 캠프 실시
- 11월 ○ ○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 실시

이를 끝으로 1년간의 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재학급 학생 및 지도 선생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경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4. 수료증 및 기념품 수여

다음은 1년간의 과정을 성실히 참여한 영재학급 학생들에게 주는 수료증 수여를 하겠습니다. 수료증 수여는 교감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하는 영재학급 과정의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융합분야 5~6학년과정 19명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학교 학생 ○○○ (수료증 수여)

5. 학교장 말씀

이어서 교장선생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6. 학생 소감 발표

다음으로 본교 영재학급을 수료하면서 졸업하게 되는 6학년 학생의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소감 발표는 ○○○ 학생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감 발표를 한 학생을 비롯하여 그동안 영재학급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7. 폐식사

이것으로 2022학년도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수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료증(예시)

제 ○○ - 호

수 료 증

이수시간 : ○○ 시간

○ ○ 학 교
5학년 ○ ○ ○

위 학생은 2022학년도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22년 월 일

○ ○ 초 등 학 교 장 직인

■ 수료 예정 증명서(예시)

제 ○○ - 호

수 료 예 정 증 명 서

학 교 :

성 명 :

생년월일 :

위 학생은 2022년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제○학년 과정 ○○분야 수료 예정자임을 증명합니다.

2022년 월 일

○ ○ 학 교 장 직인

■ 재학증명서(예시)

제 ○○ - 호

재 학 증 명 서

학 교 :

성 명 :

생년월일 :

위 학생은 2022년 ○월 ○일 현재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제○학년 과정 ○○영역에 재학 중(재학하였음을)임을 증명합니다.

2022년 월 일

○ ○ 학 교 장 직인

용도		확인자	

■ 포기서(예시)

영 재 교 육 포 기 서

소속 :

학년 :

성명 :

상기 본인은 ( ) 사유로 인하여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의 학업을 계속할 수 없기에 보호자 연서로 학업 포기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학 생 : (인)

보호자 : (인)

○○학교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예시) (앞면)

2022학년도 영재학급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안내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이에 본 영재학급에서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본 영재학급에서는 법적으로 구성된 업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도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안전하게 파기하겠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오니 확인하시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OO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 목적

○ 영재학급 운영에 있어 학생 이해와 영재교육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

2. 수집하는 개인정보 목록

○ 학생 소속교, 학년 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학부모 성명, 연락처(집, 휴대폰)등 영재학급 학생 관리와 운영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 영재학급 교육활동에 촬영된 개인 화상정보 제공

○ 영재학급 교육활동 안내를 위한 학부모 정보 제공

3.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 법적으로 정해진 자료(영재성발달기록부 : 준영구) 이외의 정보는 사용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파기함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본 영재학급에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따로 받음

5.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학생과 관련한 영재학급 업무 및 교육활동에 대한 자료 제공이 제한되니,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미리 영재학급에 연락하여 다른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학교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학생 상담 및 관리	1. 수집이용목적 : 학생상담 및 학생관리(생활기록부, 학생상담자료)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영재교육진흥법 제 11조의 4〉 2. 수집항목 : 학생 소속교, 학년, 반, 성별,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폰번호, 보호자 성명, 연락처(집, 휴대폰번호), 사진 3. 이용 및 보유기간 : 생활기록부(준영구), 학생상담자료(1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영재학급 운영관리자료에 해당 학생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예 □아니요	1. 제공받는 자 : 영재학급, 소속교(소속학교로 생활기록부 사본송부)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생활기록부 관리 및 학생관리 3. 제공하는 항목 : 학생 소속교, 학년, 반, 성별,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폰번호, 보호자 성명, 연락처(집, 휴대폰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 이용기간 : 생활기록부(준영구), 학생상담자료(1년)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영재학급 운영관리자료에 해당 학생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영재학급 SNS 가입	1. 수집이용목적 : 교육활동 안내 및 과제 탑재 2. 수집항목 : 학년, 성명, SNS 아이디 3. 이용 및 보유기간 : 1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해당 학생은 자료제공 및 과제탑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예 □아니요	1. 제공받는 자 : 영재학급 SNS 운영자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영재학급 SNS 관리 3. 제공하는 항목 : 학년, 성명, SNS 아이디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 이용기간 : 연중상시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해당 학생 과제 탑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자료 집제작	1. 수집이용목적 : 영재학급 교육활동 홍보 및 보고서 장학자료 제작 2. 수집항목 : 학년, 반, 성명, 보고서 3. 이용 및 보유기간 : 수료생 배포 및 장학자료로 활용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장학자료 내용에 해당 학생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예 □아니요	1. 제공받는 자 : 영재학급 수료생 및 지도교사, 각 학교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수료생 자료집 보유 및 교육참고자료 3. 제공하는 항목 : 성명, 학년, 반, 보고서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 이용기간 : 준영구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장학자료에 해당 학생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SMS 문자 관리	1. 수집이용목적 : 영재학급 교육활동 알림 문자 발송 2. 수집항목 : 학생 성명, 소속교, 학부모 휴대폰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 1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문자서비스 이용정보에 해당 학생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예 □아니요	1. 제공받는 자 : 문자서비스 업체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영재학급 교육활동 알림 문자 발송 3. 제공하는 항목 : 학생 성명, 소속교, 학부모 휴대폰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 이용기간 : 1년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문자서비스 이용정보에 해당 학생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개인 화상 정보 활용	1. 수집이용목적 : 영재학급 홍보자료로 활용 2. 수집항목 : 영재학급 활동에 촬영된 개인화상정보(사진) 3. 이용 및 보유기간 : 5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영재학급 홍보자료 내용에 해당 학생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예 □아니요	

학 생	성 명( ) (인)
보 호 자 (법정대리인)	성 명( ) (인), 관계 : 학생의 ( ), 연락처( )

○○학교장 귀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영재 수료증 발급대장(준영구보존 파일)

2022학년도 영재학급 수료증 발급대장

작성자: 직위 교사 성명 (인)

확인자: 직위 교감 성명 (인)

발급번호	기관명	소 속	학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이수 내용	이수시간	발급일자	담당자
2022-○○초-001	○○초 재능계발 영재학급	○○초	5	홍길순	여	○○○○.○○.○○	2022학년도 영재학급 이수	72	2022.○○.○○	○○○

엑셀 파일로 활용

※ 발급번호 양식: 2022 - ○○초 - 001

2 교과 교육과정 필요 서식

■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회의록

결재	계	교감	교장

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회의록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table>
<tr><td>일 시</td><td colspan="8">○○○○.○○.○○.(월) 15:00~15:30</td></tr>
<tr><td>장 소</td><td colspan="8"></td></tr>
<tr><td>안 건</td><td colspan="8"></td></tr>
<tr><td>회의
내용</td><td colspan="8"></td></tr>
<tr><td rowspan="4">참석
현황</td><td>정원</td><td>○명</td><td rowspan="7">참석자</td><td>구분</td><td>소속</td><td>직위</td><td>성명</td><td>서명</td></tr>
<tr><td>참석</td><td>○명</td><td>위원장</td><td></td><td></td><td></td><td></td></tr>
<tr><td>불참</td><td>○명</td><td rowspan="5">위원</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불참자</td><td colspan="2" rowspan="3"></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작성자</td><td colspan="8">소속: ○○학교 직급: 교사 성명: ○○○</td></tr>
</table>

■ 공결처리원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공결처리원

○○학교　　제　학년　　반　　성 명:

공결기간:

공결사유: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임　　(인)

위와 같이 공결처리 사유가 발생하여 공결(결석, 지각, 조퇴, 결과) 처리를 신청합니다.

※ 규 정

영재교육기관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허가한 경우

1. 학교의 행사(학교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등)로 사전에 출석사유를 알렸을 경우
2. 직계가족 사망으로 인한 결석
3. 법정전염병에 의한 결석
4. 불가항력에 의한 결석

위의 각 항은 결석 예외 규정으로 출석부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불가항력의 예시

· 인정할 수 있는 교통두절, 공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 폭설, 폭우 등 특별한 사안 발생 시
· 기타 영재교육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 전입학원서 전입기관 제출용

영재교육기관 전입학 원서

<table>
<tr><td rowspan="7">지
원
자</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성별</td><td>남, 여</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현 소속교</td><td colspan="5">○○학교 ○학년 ○반</td></tr>
<tr><td>이전 소속교</td><td colspan="5">○○학교 ○학년 ○반</td></tr>
<tr><td>이전 영재교육기관</td><td colspan="5"></td></tr>
<tr><td>이전 영재교육기관
재학기간</td><td colspan="5">○○○○.○○.○○. ~ ○○○○.○○.○○.까지 재학</td></tr>
<tr><td>이전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과시수</td><td colspan="5">○○ 시간</td></tr>
<tr><td rowspan="2">보
호
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d>지원자와의
관계</td><td colspan="2"></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5">자 택:
휴대전화:</td></tr>
<tr><td colspan="2">사 유</td><td colspan="5">(예시) 학교 전입으로 인한 영재학급 전입학</td></tr>
</table>

본인은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에 전입학을 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학교장 귀하

■ 전출원서 전출기관 보관용

영재교육기관 전출 원서

<table>
<tr><td rowspan="6">지
원
자</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성별</td><td>남, 여</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현 소속교</td><td colspan="5">○○학교 ○학년 ○반</td></tr>
<tr><td>현 영재교육기관</td><td colspan="5"></td></tr>
<tr><td>현 영재교육기관
재학기간</td><td colspan="5">○○○○.○○.○○. ~ ○○○○.○○.○○.까지 재학</td></tr>
<tr><td>현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과시수</td><td colspan="5">○○ 시간</td></tr>
<tr><td rowspan="2">보
호
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d>지원자와의
관계</td><td colspan="2"></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5">자 택:
휴대전화:</td></tr>
<tr><td colspan="2">전출 희망 영재교육기관</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사 유</td><td colspan="5">(예시) 학교 전출로 인한 재능계발영재학급 전출</td></tr>
</table>

위와 같은 사유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출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학교장 귀하

■ 영재교육이수 확인서

제○○-○○호 (영재교육기관에서 발급)

영 재 교 육 이 수 확 인 서

(전출용)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학 생 인 적 사 항	
성 명	○○○
소 속	○○학교 ○학년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주 소	
출석하여야할 영재수업시수 (전출일 현재)	(예시) ○○년 ○○월 ○○일 전출 시 ○○시간(계획된 시간)
출석한(이수한) 영재수업시수 (전출일 현재)	○○시간(본인이 이수한 시간)
결격여부	(예시) 결격사항 없음

위 학생은 2022학년도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을 위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학 교 장 직인

■ 창의융합상상소 2단계 프로그램 팀별운영 계획서

2022년 창의융합상상소 2단계 프로그램 팀별 운영 계획서(예시)

기본사항					
지도교사 성명	○○○	소속	○○중학교	담당교과	과학
대상학생	○○중학교 1학년 ○○○ ○○중학교 1학년 ○○○ ○○중학교 1학년 ○○○ ○○중학교 1학년 ○○○			지도시간	총 ○○시간
목표	• 학생 주도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공동 성장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 성과 나눔 활동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개발 및 과학적 소양 함양				

차시별 지도계획 및 강사 등록부			
회차	월/일	내용	시수
1	9/10	진로 및 학습 성향 검사 및 개인 연구 주제 발표	4
2	9/24	팀별 연구 주제 찾기 활동	3
3	10/8	연구 수행 및 나눔	4
4	10/23	○○자연사 박물관 탐방	8
5			
6		*교과시수 50시간 이상 확보*	
7			
8	11/22	창의적 산출물 연구 결과 및 성과 나눔	3
총시수			○○

■ 창의융합상상소 2단계 프로그램 수업일지

수업일지(예시)

(2단계 프로그램)

		지도 교사	○○○ (인)
일시	2022. 9. 10. (금) 4시간	수업 방법	온라인
주제	진로 상담 및 개인 연구 주제 나눔	출석 인원	4 명
수업내용	□ 진로 및 학습 성향 검사 - Holland 검사 - 검사 결과와 진로 카드를 이용한 상담 □ 개인 연구 주제 나눔 - 예비프로그램에서 제출한 개인 연구 주제 발표		
일시	2022. 9. 24. (금) 3시간	수업 방법	온라인
주제	팀별 연구 주제 찾기 활동	출석 인원	4 명
수업내용	□ 연구 방법 토론 □ 개인별 연구 주제 평가하기 및 팀별 연구 주제 찾기 - 연구 방법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개인별 연구 주제 관련 토론 - 팀별 연구 주제 찾기 활동		
일시	2022. 10. 7. (금) 4시간	수업 방법	오프라인
주제	연구 수행 및 나눔	출석 인원	4 명
수업내용	□ 새로운 풍력발전기 구조 설계하기 - 다양한 풍력발전기를 분석하여 새로운 풍력발전기를 고안하기 - 고안한 풍력발전기의 구조 설계하기 - 설계결과를 발표하고 발표 내용을 질의하기 - 질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변경하기		

3 창의적산출물 지도

■ 창의적산출물 서식 자료(예시)

가. 과제연구 수행 계획서

과제 연구 수행 계획서

(　　)팀, 지도강사: (　　)

<table>
<tr><td>과제 연구 주제</td><td colspan="4"></td></tr>
<tr><td>팀원</td><td colspan="4"></td></tr>
<tr><td>주제 선정 동기</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5">연구 방법 및 과정</td><td>일자(기간)</td><td>준비 내용</td><td>담당자</td><td>비고</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탐구 내용</td><td colspan="4"></td></tr>
<tr><td>준비물</td><td colspan="4"></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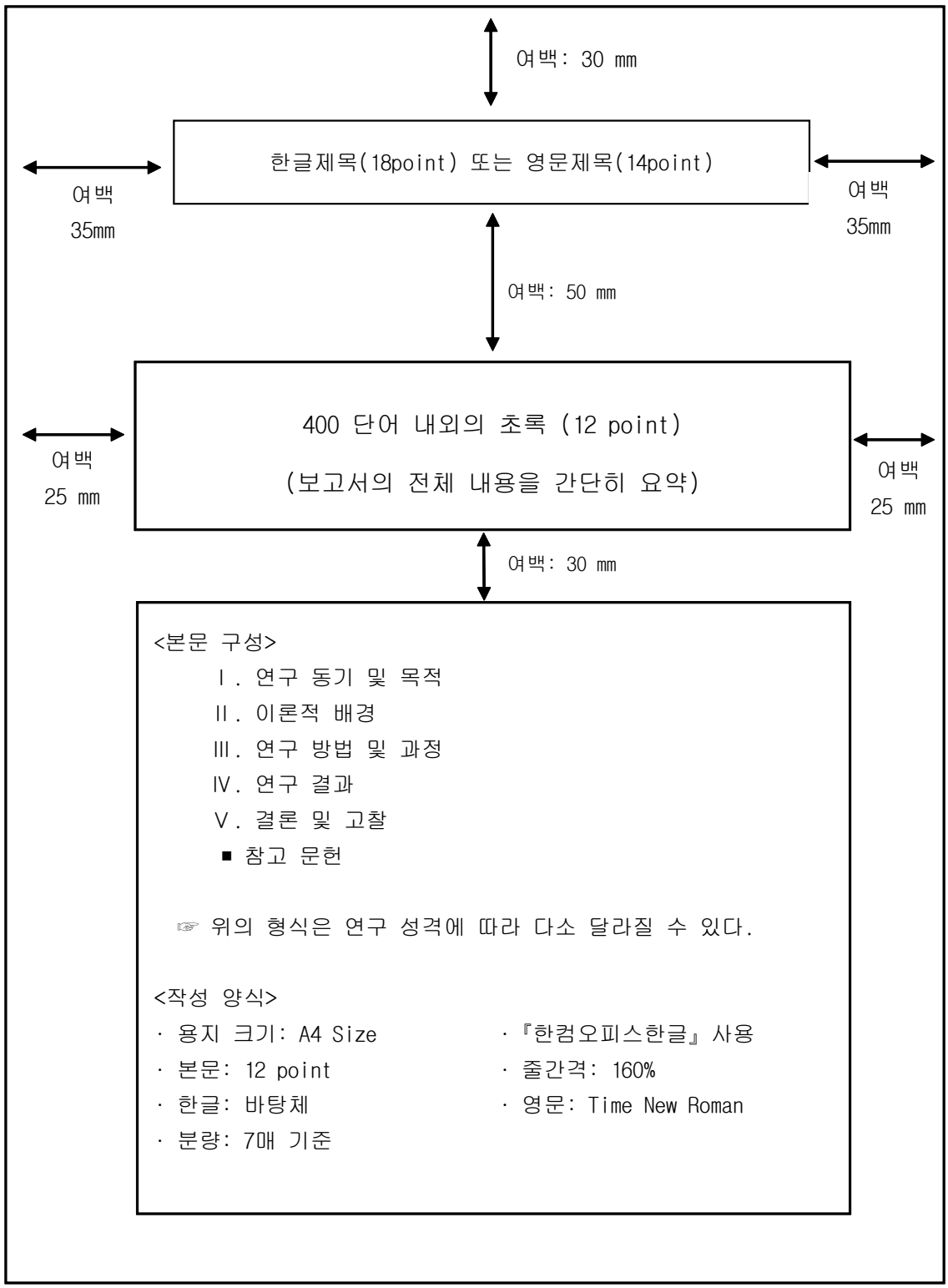
나. 과제연구 발표 계획서

<table>
<tr><td colspan="3" rowspan="2">과제 연구 발표 계획서</td><td>반</td><td>이름</td></tr>
<tr><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　　)조
지도강사 :</td><td rowspan="2">발표
순서</td><td></td><td></td></tr>
<tr><td></td><td></td></tr>
<tr><td>연구
주제</td><td colspan="4"></td></tr>
<tr><td>파일</td><td colspan="2">한글파일　　쪽</td><td colspan="2">PPT 파일　　장</td></tr>
<tr><td>연구
방법</td><td colspan="4"></td></tr>
<tr><td>역할
분담</td><td colspan="4">•
•
•</td></tr>
<tr><td rowspan="8">기자재 및
소모품
신청서</td><td>번호</td><td>품　　목</td><td>규　　격</td><td>수　　량</td><td>비　　고</td></tr>
<tr><td>1</td><td></td><td></td><td></td><td></td></tr>
<tr><td>2</td><td></td><td></td><td></td><td></td></tr>
<tr><td>3</td><td></td><td></td><td></td><td></td></tr>
<tr><td>4</td><td></td><td></td><td></td><td></td></tr>
<tr><td>5</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위 물품을 2022년 ○○월 ○○일까지 사용하고자 합니다.

2022년　　월　　일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　　)반 이름:　　서명
지도강사:　　서명</td></tr>
<tr><td>물 품 확 인</td><td colspan="3">※ 물품 반납 시 이상이 있으면 기록</td></tr>
</table>

다. 산출물 발표 보고서 양식(예시)



라. 창의적 산출물 평가(예시)

단계	차시	평가 활동	평가 방법	평가 관점	평가 척도(상 :3, 중:2, 하:1)				
					A	B	C	D	E
1 단계	1~2/6	주제선정을 위한 사전실험	결과물	실험 결과 보고서	3	3	2	3	3
			태도	진지한 참여 태도	3	3	2	3	3
2 단계	3/6	브레인스토밍을 이용한 조별토론	결과물	1. 체크리스트	3	3	2	2	2
			태도	1. 성실한 탐구 자세 2. 조별 간 협동심	3	3	2	3	2
3 단계	4/6	선정된 주제의 실험 설계	결과물	1. 탐구목적에 적합한 가설설정 2. 아이디어 제작 세부계획서	3	3	2	2	2
			태도	참여도	3	3	3	3	3
4 단계	5~6/6	탐구실험	산출물	1. 실험계획에 따른 결과보고서 2. 타당성 있는 결론	3	3	2	2	2
			태도	창의성있는 탐구자세	3	3	3	3	3
				총 합	24	24	18	21	20

( ) 단계	산출물 평가기준			평가(%)					
				만점	A	B	C	D	E
창의적 산출물 보고서 및 발표	보고서	독창성	- 새롭고 독특한 주제를 제시하는가? - 과학적으로 가치 있는 산출물인가? - 앞으로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시사해주고 있는가?	20	19	18	18	18	18
		논리성	- 탐구과정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 탐구과정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전체적으로 일관된 느낌을 주는가?	15	14	15	14	13	14
		표현력	- 의도하는 요구와 관심에 대하여 적절한 산출물인가?(연구목적이 달성되었는가?) - 탐구목적, 방법, 결과 및 해석이 분명하고 충분히 설명되어 이해하기 쉬운가?	15	15	14	13	13	14
	전시물	구성	- 연구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가?	20	20	20	18	17	19
	발표	의사소통 능력	- 연구 진행과정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가? - 연구결과와 결론을 설득력 있게,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자신들의 개념이해 수준을 적절한 용어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는가? - 발표시간을 지켜서 발표하는가?	30	30	29	29	29	29
			총 합	100	98	96	92	90	94

4 교구 및 준비물

가. 수학 영재교육 교구 및 준비물 대장(예시)

순	교구명	학습 내용	보관장소	담당자
1	지오픽스 다면체세트	공간지각 능력 향상		
2	아발론	사고력 신장 보드게임		
3	4D 프레임	도형의 원리 이해		
4	패턴블럭	수학적 추론		
5	소마큐브	입체 공간		
6	러시아워	창의 도형 퍼즐		
7	루미 큐브	사고력 신장 보드게임		
8	쉐이프 바이 쉐이프	창의 블록 놀이		
9	스퀘어 바이 스퀘어	창의 블록 놀이		
10	블록 바이 블록	창의 블록 놀이		
11	쉐이크 쉐이크 타워	공간 지각 놀이		
12	젬블로	창의력 신장 보드게임		
13	블로커스	공간 전략 보드게임		
14	조노돔 시스템 케플러 세트	수열 및 공간지각 놀이		
15	하노이탑	사고력 수학 놀이		
16	스네이크 퍼즐	사고력 및 공간지각 놀이		
17	러닝랩업	사칙연산 연습		
18	숫자 탐정	숫자 추리 보드게임		
19	대칭 거울	대칭의 원리		
20	다면체 주사위	다면체의 수학적 개념		
21	격자 보드	그래프로 표현		
22	펜토미노	다양한 모양 만들기		
23	네오픽스	창의적인 도형 만들기		
24	부피천칭	기둥과 뿔의 부피 관계		
25	쉐입스업	도형의 개념 이해		
26	쉐어로	부피의 개념 이해		

나. 과학 영재교육 교구 및 준비물 대장(예시)

영역	교구명	학습 내용	보관장소	담당자
1	진공실험장치	진공 상태의 물질 변화		
2	영상현미경	생물 관찰		
3	빛 진행 실험 장치	빛의 원리		
4	로보타미주니어	로봇의 개념과 원리		
5	로보로보 로보 키트	로봇과 SW교육 연계		
6	아두이노	발명 및 창의력 계발		
7	드론	드론의 원리		
8	오토마타	크랭크축의 원리		
9	전자블록	전자회로의 원리		
10	4D 프레임 메카트로닉스	발명 및 스마트 융합 교육		
11	레고 스토리 스타터	창의적 문제 해결		
12	레고 심플 머신	창의 공학 교육		
13	케이넥스 심플디럭스머신	창의 융합 교육		
14	케이넥스 구조공학세트	창의적 구조물 제작		
15	공룡화석 발굴 놀이 키트	지층 및 화석		
16	골드버그 장치	발명 및 창의력 계발		
17	시간경과측정자	시간의 경과값 측정		
18	인지니어스	창의력 계발 학습		
19	태양열 조리기	태양열에너지, 빛의 반사		
20	스마트폰 현미경	렌즈의 원리, 생물 관찰		
21	오호 만들기 키트	친환경 물병 만들기		
22	물시계 만들기	자격루의 원리		
23	천체망원경 만들기	렌즈의 원리 및 천체이해		

다. 예술 영재교육 교구 및 준비물 대장(예시)

순	교구명	학습 내용	보관장소	담당자
1	디자인 책상	미술과 문학 융합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2	퍼즐세트	창작 건축물 제작		
3	카메라	드로잉애니메이션 및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제작		
4	라인테스트기	애니메이션 작화의 동세와 타이밍의 이해		
5	컴퓨터	웹툰 및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 제작		
6	피날레	작곡 및 편곡		
7	리듬악기	창의적 표현 : 즉흥 연주하기		
8	피아노, 바이올린, 트럼펫 등 가락악기	창의적 표현 : 창작하기		
9	피아노, 바이올린, 트럼펫 등 가락악기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하기		
10	피아노, 바이올린, 트럼펫 등 가락악기	협력적 표현		
11	감상용 기자재	예술 융합적 표현		
12	3D 프린터	캐릭터 제작		

※ 예시안을 참고하여 각 과목별 준비물 교구 대장 정비 요망

5 수업일지 및 자기평가지 서식

수업일지

일시	. . (요일) (: - :)	장소	
지도강사		참가학생(명)	
학습주제			
준비물			
특기사항	※ 특기사항 작성 예시 1. 지적능력특성 2. 창의적 특성 3. 인성적 특성 4. 그 외 수업 중 발견되는 특성		

자기 학습 평가지

년 월 일

학급		이름		지도강사	
영역	내 용				자기평가
학습적 특성	나는 어렵고 힘든 것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3 2 1
	나는 영재학습 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했다.				3 2 1
	나는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주제에 도전하고 싶다.				3 2 1
창의적 특성	나는 참신하고 남다른 생각을 많이 했다.				3 2 1
	나는 문제를 풀어낼 때마다 아이디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어냈다.				3 2 1
	나는 이미 알려진 것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다.				3 2 1
인성적 특성	나는 학습한 내용에 대하여 만족감을 느낀다.				3 2 1
	나는 친구들과 서로 협동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였다.				3 2 1
	나는 영재학급에서 공부하는 것이 보람 있고 즐겁다.				3 2 1
영재수업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					총점
평정척도 3 - 그렇다 2 - 보통이다 1 - 그렇지 않다.					

6 영재교육기관 설치 승인 신청 계획서 서식

■ 영재학급(교육원) 설치·운영 계획 요약서

<table>
<tr><td colspan="3">영재교육기관명</td><td colspan="3">○○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 경기미래영재교육원 ○○교육지원청 창의융합상상소</td><td colspan="2">설립구분(공/사립)</td><td>공립/사립</td></tr>
<tr><td colspan="3">주소</td><td colspan="3">경기도 수원시 ○○로 ○○번길 11번지</td><td colspan="2">구분(단위,지역)</td><td>단위/지역공동</td></tr>
<tr><td colspan="3">읍면지역 해당여부</td><td colspan="3">읍면지역 해당/해당없음</td><td colspan="2">학운위 심의여부</td><td>○/×</td></tr>
<tr><td rowspan="3">기본 현황</td><td>기관장명</td><td colspan="3">김대한</td><td rowspan="2">담당자</td><td>성명</td><td>이민국</td></tr>
<tr><td>학교전화</td><td colspan="3">031-249-0000</td><td>연락처</td><td>HP: 010-0000-0000</td></tr>
<tr><td>신청학급수</td><td>2</td><td>영역</td><td>융합</td><td colspan="2">최초 설립년도</td><td>2007/신규</td></tr>
<tr><td colspan="9">2022 기본 현황</td></tr>
<tr><td rowspan="3">운영현황</td><td>교육대상학년</td><td>초5</td><td>초6</td><td></td><td></td><td>계</td></tr>
<tr><td>학급 수</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학급 인원</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교육과정운영시수</td><td>교과 지도시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비교과 지도시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5">지도교사연수현황</td><td rowspan="2">기초연수</td><td>집합</td><td colspan="2">명</td><td colspan="2" rowspan="2">총 지도 교사수</td><td rowspan="2"></td></tr>
<tr><td>원격</td><td colspan="2">명</td></tr>
<tr><td colspan="2">심화연수</td><td colspan="2">명</td><td colspan="2" rowspan="3">연수이수 교사수</td><td rowspan="3"></td></tr>
<tr><td colspan="2">국외연수</td><td colspan="2">명</td></tr>
<tr><td colspan="2">관찰추천연수</td><td colspan="2">명</td></tr>
</table>

<table>
<tr><th colspan="5">2022학년도 운영 계획</th></tr>
<tr><td rowspan="4">교육과정운영</td><td>교과 교육활동
(시간수, 수업형태, 교육내용 간략히)</td><td colspan="3">. 휴일, 방학중 집중수업(○○시간)
. 주중수업 ○○시간(○요일, ○요일)
. 과학, 수학, 영어, 발명, 독서, 학교특색으로 운영되는 시간 등 기록</td></tr>
<tr><td>과제 지도 활동
(산출물 발표 등)</td><td colspan="3">. 학기당 1회 지도
. 산출물 발표 1회
. 참가현황 00참가 예정</td></tr>
<tr><td>비교과 교육 활동</td><td colspan="3">자율운영: 실시예정인 기관만 작성
. 5. 4. 00 식물원 현장학습
. 7.18~7.20 00 여름캠프</td></tr>
<tr><td>평가</td><td colspan="3">. 과제물 포트폴리오, 수업태도, 산출물발표대회를 통한 평가</td></tr>
<tr><td colspan="2" rowspan="2">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법</td><td>다단계선발
(현황만 간략히)</td><td colspan="2">관찰추천선발
(현황만 간략히)</td></tr>
<tr><td>5학년: 명
6학년: 명</td><td colspan="2">5학년: 명
6학년: 명</td></tr>
<tr><td rowspan="3">예산 집행 계획
(단위 :천원)</td><td>예산총액</td><td colspan="4">20,000천원</td></tr>
<tr><td>편성액</td><td>시간당강사수당/ 총액</td><td>물품 및 준비물 구입</td><td>행사활동
(특강, 체험학습 등 포함)</td><td>기타</td></tr>
<tr><td>계</td><td>35천원/10,000천원</td><td>3,000천원</td><td>6,000천원</td><td>1,000천원</td></tr>
<tr><td colspan="2">기타(특색사업 등)</td><td colspan="3"></td></tr>
</table>

■ 영재학급(교육원) 설치·운영 계획서(예시)

2022학년도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운영 계획서

Ⅰ 명칭: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Ⅱ 목적

○○분야의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교육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창의력과 탐구사고력이 뛰어난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한다.

Ⅲ 방침

1. 영재교육대상자는 선수학습에 의한 관련 교과목 성적우수자가 아닌, 창의성 및 발전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발굴·육성한다.
2. 교육영역은 ○○분야를 우선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 및 기타 분야로 확대한다.
3.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은 교사 관찰·추천 및 선발 평가를 통해 객관성 및 신뢰성을 높인다.
4.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영재교육 전문기관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개발한 자료를 활용하되, 그 내용은 ○○지역실정에 맞게 구성하여 적용한다.
5. 영재교육 담당교원은 해당 영역을 전공한 교사 및 영재교육 지도교사 연수를 이수한 교사로 하며, 전문성 신장을 위해 영재교육 관련 연수 참여 및 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6. 융합인재교육(STEAM)에 기반을 둔 주제통합학습으로 창의적인 융합인재 및 융합적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에 힘쓴다.

Ⅳ 위 치: 경기도 ○○시 ○○구 ○○로 ○○○(○○동)(http://○○○○○.go.kr)

전화: (031)○○○-○○○○, Fax: (031)○○○-○○○○

Ⅴ 영재학급 조직

Ⅵ 영재학급 지도교사 현황

순	담당학급	소 속	직	성 명	담당과목	비고
1	초4학년반		교사			
2	초4학년반		교사			
3	초4학년반		교사			
4	초5학년반		교사			
5	초5학년반		교사			
6	초5학년반		교사			

Ⅶ 영재학급 시설 설비 현황

1. 강의실 현황

구 분	교사용 실험대	학생용 실험대	학생용 의자(개)	기타
과학실험실	1	6	30	교사용 컴퓨터 1개, 프로젝션 TV 1개
컴퓨터실	1	30	30	교사용 컴퓨터 1개, 프로젝션 TV 1개

2. 각종 기자재 및 교재 교구 보유 현황

가. 시청각 기자재

구분	실물 화상기	디지털 카메라	프로젝션 TV	3D TV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보유 수량	2	4	1	1	30	2	1	1

Ⅷ 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

1. 시기: 2022.○○. ~ 2022.○○.
2. 영재교육대상자 범위

   관내 초3~중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과 행정구역상 중학교 배정을 ○○로 받는 학생 중 각 학교 영재교육대상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
3. 선발 과정(교사 관찰·추천)

선발계획 수립 **(영재학급)** ➡ 선정심사위원회 공고문 심의 **(영재학급)** ➡ 선발공고 알림 **(영재학급)** ➡ 관찰·추천 희망자 접수 **(단위학교)** ➡ 담임 및 교과 담당교사 관찰평가 **(단위학교)** ➡

학교추천 위원회 **(단위학교)**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영재학급)** ➡ 선정심사위원회 합격자 심의 **(영재학급)** ➡ 합격자 통보 **(영재학급)**

4. 선발학생의 결원보충 방법: 결원 시 예비 합격자를 대상으로 충원

   (단, 출석 교과수업 진행시수가 20% 미만인 경우에 한함)

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방향

가. 기본 방향

1) STEAM에 기반을 둔 주제통합학습으로 창의적인 융합인재 육성을 꾀한다.

2) 개별화 교육을 위한 수업양식, 사고양식,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3) 사회·정서적 발달과 지도성 함양을 위해 노력한다.

나. 기본방침

1)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 및 영재성 계발, 도덕성 함양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2) 프로그램은 전문기관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개발한 자료를 본 영재학급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한다.

3) 교육과정은 주기적으로 교육내용, 방법 및 운영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다른 영재학급과 유기적 연계성을 유지하여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축적 및 관리한다.

4) 영재교육에서 요구되는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학생의 능력에 알맞은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5) 학습 활동에서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을 중시하는 동시에 학습의 개별화에 노력한다.

6) 학생들에게 공동학습 과제를 제시하고 소집단 학습 활동을 통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한다.

다. 영역별 운영의 기본 방침

교과 활동	▪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유형과 이를 육성할 수 있는 주제를 개발 · 적용한다. ▪ 수학 · 과학적으로 그 내용의 질적 수준이 높은 주제를 개발 · 적용한다. ▪ 주제에 포함된 하위 학습과제들 간에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화될 수 있어야 한다. ▪ 풍부한 수학적 사고, 과학적 탐구 활동의 습관을 개발시킬 수 있는 주제를 개발 · 적용한다. ▪ 학생들이 조작물과 학습도구를 통해 실험, 실측, 조작, 관찰 등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창의적 사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프로그램에 맞는 다양한 영재교육 심화학습 모델을 적용하여 수업한다. ▪ 수업과 평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창의적 산출물 연구 활동	▪ 교과 활동이나 현장 체험학습 활동 과정에서 더욱 심화 · 발전적인 내용에 의문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관심을 갖도록 한다. ▪ 자기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범위의 연구 주제를 선정하도록 한다. ▪ 수학 · 과학의 내용을 결과물이 아닌 발생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한다. ▪ 문제해결 과정이나 탐구과정에서 바람직한 수학 · 과학적 생각과 태도를 형성하여 학습하는 즐거움을 맛보도록 한다. ▪ 자기가 탐구한 주제의 결과물을 전시, 발표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
기타 활동 (체험활동 등 기타)	▪ 교과 활동을 보완하면서 다양한 현장 체험 활동을 통하여 교육의 적합성과 창의성을 높이도록 한다. ▪ 다양한 자료의 활용으로 창의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능력이 신장되도록 한다. ▪ 다양한 학습 주제와 체험 위주의 활동 내용으로 자발적이며 자율적인 활동이 되도록 한다. ▪ 지역사회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 개인 나름대로 봉사활동 계획을 세워 사회봉사하는 체험을 갖도록 권장한다.

2. 교육과정 시간운영 및 편성내용

구분 \ 학년		초등 과정(96시간)		
		초4	**초5**	**초6**
교과 활동		72	72	72
비교과 활동	개강식	2	2	2
	특강	2	2	2
	현장체험 및 캠프활동	6	6	6
	창의적 산출물 연구 활동	10	10	10
	봉사활동	2	2	2
	수료식	2	2	2
연간 총 시수		96	96	96

3. 교육내용

가. 교과 활동

1) 교과영역: 융합

2) 영재교육 프로그램

가) 교과활동은 72시간 이상으로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개발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영재교육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자료를 활용하되, 그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

나) 교수학습모형: 렌줄리의 3부 심화학습, 프로젝트학습(PBL) 등

다) 교수학습방법: 문제해결력, 호기심 유발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활용

라) 지도교사 워크숍을 통해 자체 프로그램 개발

나. 비교과 활동

1) 창의적 산출물 연구 활동

- 개인(집단)별 창의적 산출물 연구 활동을 하며 과제점검 및 산출물발표 등의 내용으로 구성
- 창의적 산출물 점검 시간(지도 8시간) 및 발표(1회, 2시간) 실시

2) 기타 활동: 개강식, 현장체험 및 캠프활동, 봉사활동, 특강, 수료식

4. 교육과정 지도체계

가. 교과활동 : STEAM형 융합교육(수학·과학)

교 육 목 표	■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을 기른다. ■ 과학 · 기술 · 공학 · 수학의 합리적, 논리적 특성과 예술의 혁신적 특성을 통해 수학 · 과학에 흥미와 이해도를 제고한다. ■ 수학 · 과학적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현실 적용과 다양한 영역과의 연계성을 체험함으로써 배운 과학과 지식을 깊이 있게 이해한다.
교 육 중 점	■ 수학 ·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 갖게 한다. ■ 실생활 속에서 관련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생각하게 한다.
교수·학습 방 법	■ 생활 주변에서 발생되는 많은 정보를 수학적 ·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자료를 분류·조직·정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흥미 있는 정보를 활용한다. ■ 기존의 개별 교과 중심의 접근법을 넘어 보다 새로운 차원에서 21세기 역량을 학습하는데 적절하도록 한다. ■ 폭넓은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내도록 하고 인과관계에 대한 높은 흥미도와 추리력, 창의적 사고와 행동이 길러지도록 한다.
평 가	■ 수학 · 과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 기능 등의 의미 있는 이해에 대한 평가 ■ 일상과 관련된 문제 상황이나 문제를 수학적 · 과학적으로 접근, 조직, 해결하는 능력 평가 ■ 수학 · 과학 내용과 관련된 유연하고 다양한 사고력과 창의성 평가

나. 창의적 산출물 연구 활동

교 육 목 표	■ 스스로 주제를 선택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방법대로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기른다. ■ 타인과의 활발한 토의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며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기른다. ■ 탐구 활동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류, 해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분석력 및 종합력을 기른다.
교 육 중 점	■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탐구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탐구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분류, 분석, 종합 등의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한다. ■ 탐구보고서의 작성법을 알고 탐구 내용을 보고서의 형식에 맞게 작성한다. ■ 상호간에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상호평가 및 수정·보완의 기회를 갖는다.
교수·학습 방 법	■ 주제탐구 학습의 의미와 필요성 ■ 해결 가능한 주제의 발굴 및 탐구 계획서 작성하기 ■ 다양한 탐구 활동과 문제해결 활동 ■ 보고서의 양식 및 작성법, 창의적 생산물 제작 ■ 보고서와 생산물 전시 및 발표 ■ 학생 상호평가 및 지도교사 평가를 통해 수정·보완
평 가	■ 참신하고 해결 가능한 주제가 선정되었는가? ■ 탐구 주제에 적절한 탐구 과정과 문제해결은 창의적으로 전개되었는가? ■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보고서 및 생산물이 제작되었는가? ■ 탐구과정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발표하며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는가?

다. 체험 활동

교 육 목 표	■ 다양한 체험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창조적이며,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신장시킨다.
교 육 중 점	■ 교육과정과 지역 특성, 영재학급 실정, 학생,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창의적인 사고력과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학습활동을 전개한다. ■ 학생들의 개성, 흥미, 능력을 존중하며 즐겁게 참가하도록 학습의 개별화에 노력한다.
교수·학습 방 법	■ 학생들에게 공동의 학습과제를 제시하고 소집단 학습을 통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 ■ 학습 현장에서 질서교육과 환경교육으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기르는 기회가 되도록 운영한다. ■ 사전 ·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며 특히 운영 후에는 감상문, 관찰기록문, 참관 소감록 등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평 가	■ 현장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캠프활동 소감문 등을 평가하여 종합산출물 평가에 반영한다. ■ 체험활동 참여도, 협동성, 질서 등 과정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프로그램 기획, 운영, 만족도 등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체험교육활동의 질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5. 학사 운영

가. 교육 대상: 초등 4~6학년

나. 학급편성 및 수업운영: 주당 2~4차시 출석 수업

구분(과정)		정원	학급수	수업요일	장소
초등	4학년	20명	1학급	지정요일	지정장소
	5학년	20명	1학급		
	6학년	20명	1학급		

다. 과정 운영

1) 운영기간: 2022.4. ~ 12.

2) 이 프로그램은 비정규교육활동으로 본 프로그램의 이수를 속진이나 조기 졸업으로 갈음할 수 없음

라. 생활지도

1) 영재학급내 생활 지도

가) 지도교사는 학생 실태파악 및 개별상담 실시

나) 자율적인 생활규칙 준수 유도

2) 영재학급 활동 안내

영재학급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스마트 공지 시스템(e-알리미 등)을 통해 안내

6. 평가 및 수료

가. 평가 목적

연간활동에 대한 관찰결과를 평가하여 전인적 성장과 영재교육의 수료 및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나. 평가 방침

1) 학습자의 교과 활동을 평가한다.

2) 매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3) 수업활동에서 지적·학습 능력 특성, 창의적 특성, 정의적 특성을 평가한다.

4) 모든 평가 결과 자료는 이수대상자 평정에 활용한다.

다. 평가영역 및 방법

평가영역		반영비율	평가방법	평가시기	비고
출석평가(10점)		10점	매시간 출석 확인	4~11월	
수업 활동 (45점)	창의적 특성	15점	각 프로젝트별 지도교사의 일일 체크리스트	4~11월	
	지적·학습 능력 특성	15점			
	태도	15점			
창의적 산출물 연구 활동 (45점)	보고서	25점	보고서 및 발표	4~11월	
	발표(의사소통능력)	10점			
	참여태도	10점			
총점		100점			

라. 평정 세부 기준

1) 출석평가(10점)

구 분	결석	지각
배점	1일 결석시 1점 감점	1회 지각시 0.5점 감점
비고	• 총 교과활동시수의 80% 이상 출석 시 수료 가능 • 공결: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감점되지 않는다. - 학교의 행사(학교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로 사전에 출석사유를 알렸을 경우 - 직계가족 사망으로 인한 결석 - 법정전염병에 의한 결석 • 공결의 경우 수업일 전후 10일 이내에 결석사유서(공결처리원)를 제출해야한다.	

2) 수업활동(45점)

순	영역	평가기준		점수	비고
1	창의성(15)	유창성(5)	문제 상황에서 많은 아이디어나 해결방안을 생각해냄	5	각 교사별 수업일마다 일일 평가표를 작성하여 누계 기록하고 그 결과를 합산하여 45점 점수 기준으로 환산함
			문제 상황에서 약간의 아이디어나 해결방안을 생각해냄	3	
			문제 상황에서 아이디어나 해결방안을 생각하는데 어려워함	1	
		독창성(5)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결과를 도출하여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남	5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결과를 도출하여 표현하는 능력이 좋은 편임	3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결과를 도출하여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짐	1	
		정교성(5)	토론을 통해 도출해낸 자신의 아이디어를 붙여 보다 가치 있게 발전시킴	5	
			토론을 통해 도출해낸 자신의 아이디어를 붙여서 가치 있게 발전시키려 노력함	3	
			토론을 통해 도출해낸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이지 않음	1	
2	지적·학습 능력(15)	호기심(5)	호기심이 강하여 질문을 5회 이상 함	5	
			호기심이 있으며 질문을 1~4회 함	3	
			호기심을 보이지 않으며 질문을 하지 않음	1	
		분석·탐구(5)	관찰력이 예리하고 문제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탐구함	5	
			관찰력이 부족하거나 문제 상황을 분석·탐구하는 것을 어려워함	3	
			관찰력이 매우 부족하고 문제 상황을 분석·탐구하는 것을 어려워함	1	
		적용·활용(5)	다양한 정보와 상식을 가지고 적절하게 적용하고 활용함	5	
			제한된 정보와 상식을 가지고 약간 적용하고 활용함	3	
			주어진 정보와 상식을 가지고 적용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워함	1	
3	태도(15)	성실성(5)	교사가 의도에 따라 학습에 임하며 학습 후 정리정돈을 잘 함	5	
			교사에게 1~2회 지적을 받거나 정리정돈이 미흡	3	
			교사에게 3회 이상 지적을 받거나 정리정돈이 미흡	1	
		협력성(5)	친구들과 서로 협동하며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함	5	
			친구들과 협동하지 않거나 모둠활동에 방해를 함	3	
			친구들과 협동하지 않고 활동에도 방해를 함	1	
		적극성(5)	문제해결에 매우 도전적이며 발표를 3회 이상 함	5	
			문제해결에 도전적이며 발표를 1~2회 함	3	
			문제해결을 회피하며 발표를 하지 않음	1	

3) 창의적 산출물 연구 활동(45점)

구 분		보고서(25점)		발표(의사소통능력)	참여태도
		계획서	최종보고서		
배 점		5	20	10	10
평가기준		• 새롭고 독특한 주제를 제시함 • 수학적 혹은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음 • 연구 설계를 체계적으로 계획하였음	• 창의성(5점) • 논리성(5점) • 표현력(5점) • 구성력(5점)	• 연구 진행과정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진술함 • 연구결과와 결론을 설득력 있게 독창적으로 제시함 • 자신의 개념이해 수준을 적절한 용어를 활용하여 표현함 • 발표시간을 지켜서 발표함	• 조별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 •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임함 • 친구들과 협력하여 산출물 결과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
기준에 대한 배점	상	평가기준 3가지에 해당(5)	각 영역별 상(5)/중(3)/하(1) 점수부여	평가기준 4가지에 해당(10)	평가기준 3가지에 해당(10)
	중	평가기준 2가지에 해당(3)		평가기준 3-2가지에 해당(5)	평가기준 2가지에 해당(5)
	하	평가기준 1가지에 해당(1)		평가기준 1가지에 해당(1)	평가기준 1가지에 해당(1)
비고				해당사항 없음(0)	해당사항 없음(0)

마. 평가 결과의 처리

1) 각종 평가기록부에 누가 기록한다.

2) 학급별로 학년말에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영재성발달기록부를 작성하여 소속 학교에 통지한다.

3) 평가결과는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자료로 이용한다.

[2022학년도 경기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매뉴얼, 선발 방침] 1쪽 참고

영재교육대상자는 매년 선발을 원칙으로 하고,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당해 연도 수료예정자 가운데 기관의 특성에 따른 자동진급 비율에 의거 다음 학년에 자동진급 시킬 수 있으나, **가급적 영재교육 기회확대를 위해 자동진급비율을 낮추는 것(또는 삭제)을 권장함** (학칙에 명시, 자동진급 비율 또한 선심위에서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

바. 수료증 수여

학칙에 의하여 우리 영재학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수여한다.

7. 출결 관리

가. 출결관리는 올바른 학습 분위기 및 학습태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나. 출결 관리를 위하여 출석부 및 결석사유서를 활용한다.

다. 출석 불량자의 경고장 발송

1) 무단결석을 2회 한 경우에 소속 학교로 출석지도 요청서(경고장)를 발송한다.

2) 경고장 발송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학칙에 의하여 퇴학처리를 하거나 수료증을 수여하지 않는다.

라. 결석의 종류

1) 인정결석(공결): 학교 학습활동 과정에서 공적인 사유로 인정되고 미리 사유를 고지한 결석으로 결석일수에 합산하지 않는다. (교육청 및 학교 대표로 대회출전, 학교 공식 행사 등의 사유로 인한 결석, 법정 전염병 등)

2) 미인정결석(병결 포함): 개인이 임의로 하는 결석

X 연간 교육과정 프로그램

1. 융합 영재교육 연간 시간 계획(예시)

월	일	요일	영역	시수	활동주제	지도교사	비고
4	9	토	행사	2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		
	12	화	수학	2	즐거운 퍼즐게임	000	
	12	화	주제탐구학습	2	주제탐구학습활동	000	계획서 제출
	19	화	수학	2	퍼즐? 어떻게 풀지	000	
	19	화	과학	2	협동을 배우자		
	26	화	수학	2	DIFFY와 내가 찾은 규칙		
	26	화	과학	2	미래세대 게임		
5	10	화	수학	2	디피(Diffy)의 발, 머리를 찾아라!		
	10	화	과학	2	햄버거 커넥션		
	17	화	수학	2	디피(Diffy) 게임을 즐겨라!		
	17	화	과학	2	생물 다양성		
	24	화	수학	2	디피(Diffy) 게임의 숨은 규칙을 찾아라!		
	24	화	과학	2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서		
6	7	화	수학	2	새로운 디피(Diffy) 게임을 만들어라!		
	7	화	과학	2	친환경 작품 제작		
	14	화	수학	2	수 퍼즐		
	14	화	과학	2	고마운 종이		
	25	토	현장체험	6	현장체험학습		
	28	화	주제탐구학습	2	주제탐구학습활동		중간보고서 제출
	28	화	수학	2	바둑돌 퍼즐		
7	5	화	과학	2	불타는 종이?		
	5	화	수학	2	페그 퍼즐		
	12	화	과학	2	종이의 변신		
	12	화	수학	2	정사각형 퍼즐-펜토미노		
	19	화	과학	2	I LOVE 지구! 지구를 살려라		
	19	화	수학	2	테셀레이션-공동 작품 만들기 1		
8	23	화	과학	2	탄소 발자국을 줄여라		
	23	화	수학	2	테셀레이션-공동 작품 만들기 2		
	30	화	과학	2	나는 재활용 도사		
	30	화	수학	2	평면과 입체의 조화		
9	6	화	과학	2	신토불이 신토불이		
	6	화	수학	2	도형퍼즐-칠교놀이		
	20	화	과학	2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소비자		
	20	화	수학	2	4D프레임으로 입체 구조물 만들기		
	27	화	과학	2	지구를 지키는 환경 파수꾼 1		
	27	화	수학	2	프렉탈 도형-시어핀스키 피라미드 1		
10	4	화	과학	2	지구를 지키는 환경 파수꾼 2		
	4	화	수학	2	프렉탈 도형-시어핀스키 피라미드 2		
	11	화	과학	2	지구를 지키는 환경 파수꾼 3		
	11	화	수학	2	전체 활동 평가		
	18	화	주제탐구학습	2	주제탐구학습발표회		최종보고서 제출
	25	화	행사	2	수료식		
총계				88			

2. 음악 영재교육 중등 연간 시간 계획(예시)

월	일	요일	시수	영역	활동 주제	지도교사	비고
4	14	목	2	행사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		
	23	토	3	교과	스틱으로 다양한 리듬 표현하기		
	30	토	3	교과	창의적 표현 - 즉흥연주하기1		
5	7	토	3	교과	창의적 표현 - 즉흥연주하기2		
	14	토	3	교과	전공실기		
	21	토	3	교과	음악이론 악곡 분석		
	28	토	3	교과	발성과 호흡, 화음		
6	4	토	3	교과	시창·청음의 필요성과 발성법		
	11	토	3	교과	시창청음 단계적 학습 및 합창연습		
	18	토	3	교과	합창의 아름다움 느끼기		
	25	토	3	교과	전공실기		
7	2	토	3	교과	시창청음 단계적 학습		
	9	토	3	교과	마스터클래스		
	16	토	3	교과	1회 향상연주회		
	23	토	3	교과	시창청음 단계적 학습		
	30	토	3	주제탐구학습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 준비		계획서제출
8	20	토	3	교과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하기		
	27	토	3	교과	전공실기		
9	3	토	3	교과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하기		
	17	토	3	교과	앙상블		
	24	토	3	교과	전공실기		
10	1	토	3	교과	음악 맵핑을 통한 음악미술 통합수업		
	15	토	3	교과	앙상블		
	22	토	3	교과	전공실기		
	29	토	3	교과	마스터클래스		
11	5	토	3	주제탐구학습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 준비		
	12	토	3	교과	2회 향상연주회		활동보고서제출
	19	토	3	체험	뮤지컬 공연 관람		
12	22	목	3	행사	수료식 및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		발표회
총계			86				

3. 미술 영재교육 중등 연간 시간 계획(예시)

월	일	요일	시수	영역	활동 주제	지도교사	비고
4	14	목	2	행사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		
	23	토	6	교과	미술과 융합		
	30	토	6	교과	미술과 융합		
5	14	토	6	교과	전통회화의 멋과 향기		
	21	토	6	교과	전통회화의 멋과 향기		
	28	토	2	체험	학생미전 관람		
6	4	토	6	교과	매체연구		
	11	토	6	교과	매체연구		
	18	토	6	교과	매체연구		
	25	토	3	주제탐구학습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 준비		계획서제출
7	2	토	6	교과	창작건축물		
	9	토	6	교과	창작건축물		
8	27	토	6	교과	창작건축물		
9	3	토	2	체험	미술과 과제우수전 관람		
	24	토	6	교과	현대미술 따라잡기		
10	8	토	6	교과	현대미술 따라잡기		
	15	토	6	교과	현대미술 따라잡기		
	22	토	2	체험	현대미술전 관람		
11	5	토	3	주제탐구학습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 준비		
12	22	목	3	행사	수료식 및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		활동보고서제출
총계			95				

XI 영재교육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1. 구성: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을 기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
2. 위원의 임기: 3년(3회 이내 연임가능)-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7조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기는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위원회 개최: 위원장의 요구 시 필요에 따라 운영한다.
4. 심의사항: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아래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나. 영재선발 과정에서의 이의 접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다. 그밖에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5. 심의방법: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6. 선정심사위원회 구성(15인 이내 구성)

연번	직책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				
4	위원				
5	위원				
6	위원				
7	위원				
8	간사				

XII 소요경비의 조달 계획 및 재정 운영 계획

1. 영재학급 소요경비 조달 계획

가. 소요경비: ○○천원

나. 재정확보 계획

1) 자체예산: ○○천원

2) 수익자 부담: ○○천원

2. 영재학급 재정 운영 계획(예시)

연번	사업내용	산출근거	예산액	비고
1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			
2	지도강사 강의수당			
3	교구소모품비(준비물)			
4	현장체험학습			
5	창의적산출물발표회			
6	영재학생특강			
7	봉사활동			
8	간식비			
9	수료식			
합 계				

3. 수강료 환불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수강료 징수기준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가. 수업료: 운영 도중 영재학급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환불을 하지 아니하고, 전출 등으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하여 포기한 경우에 수업에 참여한 기간을 제외한 비용을 정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나. 실험실습비 등 자료구입 비용: 전출 등으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환불하지 않는다.(단, 자료 구입 전에는 비용을 정산하여 환불한다.)

tip

<예술 영재학급의 목적 및 방침 예시>

Ⅰ. 목적

예술분야의 잠재적 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조기 발굴·육성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계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창의적 통찰력으로 사회, 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사회의 창조적 인재를 육성한다.

Ⅱ. 방침

1. 예술 영재 교육 대상자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을 바탕으로 창의성 및 발전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발굴·육성 하는데 중점을 둔다.
2.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영재들의 상상력과 표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한다.

tip

<예술 영재학급의 교육과정 지도체계 예시1>

음악 영역

교육 목표	■ 사회, 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사회의 창의적 음악 인재를 기른다. ■ 음악적 재능에 대한 성향을 관찰하고, 다양한 학문을 통합하여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음악적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타 예술 및 사회문화적 경험을 음악적 표현과 구성으로 완성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며 소통한다.
교육 중점	■ 음악활동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학생의 잠재적 재능을 탐색하고 음악적 감수성을 풍부하게 한다. ■ 다양하고 체계적인 경험을 통해 음악적 재능에 적합한 구체화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 음악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예술적 역량이 성장하는 토양을 제공하고 음악을 중심으로 타예술 및 타교과와의 통합 교육을 실시한다.
교수 학습 방법	■ 학생의 특성, 수준과 요구에 따라 교과목을 다양화하고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실시한다. ■ 습득한 음악개념을 음악활동과 연계, 악기를 통해 감정과 기술 표현력 계발 등 학생의 관심, 재능에 적합한 구체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음악 이론과 실기 교과와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음악에 대한 전문적 지식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한다. ■ 예술적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 음악과 인문사회 및 문화예술을 연결시켜 이해하고 이를 음악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평 가	■ 리듬감, 음감, 즉흥연주, 음악해석 능력, 음악에 대한 감수성, 통찰력 등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다양한 창의적 표현을 유도하여 청각적 민감성과 창의성을 평가한다. ■ 자신만의 표현을 사용하여 독창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 전공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습 주도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한다.

tip

<예술 영재학급의 교육과정 지도체계 예시2>

미술 영역

교 육 목 표	■ 미술 분야(회화, 디자인·조형)의 영재 교육을 통해 미래 예술문화를 선도할 인재를 기른다. ■ 미술 영역의 심화된 내용 학습과 고급 사고력의 계발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미술 분야와 인접 학문 분야 및 사회에서의 가치를 창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계발한다.
교 육 중 점	■ 미술영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표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중심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미술과 타 예술 분야의 관계를 이해하고 미술의 문화적, 사회적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 새로운 작품의 아이디어를 미래지향적으로 형상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자질과 창의적 요구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다.
교 수 학 습 방 법	■ 미술교육의 특성, 학교, 학생의 상황을 고려한 자체 프로그램 활용한다. ■ 미술적 표현력 향상, 문제해결력, 종합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한다. ■ 자신이 선택한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조사와 현장체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현실세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양한 분야의 선택기회를 제공하고 선택한 내용을 단계적으로 질적인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 미술의 다양한 형식의 특성과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독창적인 조형언어를 사용하여 개인의 표현세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평 가	■ 재료나 매체의 특성, 선택한 표현방법 등을 통해 작품이 창의적으로 제작되었는가? ■ 학생들이 탐구, 제작, 기록한 모든 자료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가? ■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운영 규칙(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영재학급은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이라 칭한다.
(이하 '영재학급'이라 한다)

제3조(위치) 본 영재학급은 경기도 ○○시 ○○구 ○○로 ○○○(○○동)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수업연한) 본 영재학급의 수업연한은 해당 학년별로 1년으로 한다.

제5조(입학자격) 본 영재학급에 해당 학년별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학교장이 최종 선정하여 입학을 허가한 자로 한다.

1. 일반전형: 1단계 개별추천, 2단계 학교추천위원회 추천, 3단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발 예정 인원 순위 내에 있는 자
2. 우선전형[2]: 전 학년도 본 영재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1년간 지도강사의 누적 관찰평가를 통해 입학 정원의 ○%(총○명) 이내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당해연도 우선전형 대상자(자동진급 대상자)로 선발된 자
3. 사회통합전형 합격자
4. 기타 전형을 통하여 영재학급 학교장이 최종 선정하여 입학을 허가한 자

제3장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제6조(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학급 수는 ○개 학급으로 운영하며, ○○학교 ○학년 20명, ○학년 20명, ○학년 20명 총 3개 학급 60명 정원으로 편성한다.

---

2) **자동진급이 없는 영재교육기관에는 해당없으며, 삭제요망**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평가

제7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과활동과 비교과 활동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과 활동: 영재교육 전문기관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개발, 보급하는 교재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수학, 과학 및 기타영역의 내용으로 편성·운영한다.
2. 비교과 활동: 교과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기타활동이라고 한다.

제8조(수업일수) 교과활동은 학년 학급별로 72시간 이상 수업하며 비교과 활동(현장체험학습, 캠프활동, 멘토링 과제지도 등)은 수익자 요구 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본 영재학급은 비정규과정(방과후 프로그램)운영으로 하며 평가는 년 1회 연간활동 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서술식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소속 학교에 통보한다.

제10조(영재교육이수자 자동진급제)[3] 본 영재학급 이수자는 다음년도에 입학정원의 ○%내에서 자동진급되고,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영재교육이수자 자동진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학년에서 ○학년으로 진급
2. 학업성취 및 학습태도에 대한 누가기록, 관찰내용 및 실적을 근거로 진급이 어려운 자는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동진급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학년, 학기, 휴업일

제11조(학년, 학기) 매 학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하며 학기 구분은 하지 않는다.

제12조(휴업일) 영재학급 운영 계획에 의거 교과활동과 비교과 활동 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 및 법으로 정하는 임시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6장 입 학

제13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로 한다.

제14조(입학결정) 본 영재학급의 입학은 학칙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15조(입학서류) 본 영재학급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서약서) 입학을 허가 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영재학급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증인)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

3) 자동진급이 없는 영재교육기관에는 해당없으며, 삭제요망

제7장 전입학 및 상벌

제18조(전입학)

1. 연간 교과활동 시수 20% 미만 전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예비합격자의 순위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한다.
2. 예비합격자의 충원 기간이 지난 다음에 결원이 발생시 희망자에 한해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가. 전입학 허용 범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정원내에서 충원할 수 있다.
   (단, 전출 영재학급에서의 교과활동시수와 전입 후 영재학급 교과활동시수의 합이 본 영재학급 총 교과활동시수의 80% 이상이어야 함)
   나. 구비 서류: 전입원서, 영재교육 이수 확인서

제19조(표창) 품행이 바르고 교과활동, 주제별 체험학습, 조 연구 활동 분야의 성적이 우수한 자는 학년말에 학교장 표창을 실시한다.

제8장 과정의 수료

제20조(수료)

1. 각 학년별 교육과정의 수료는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각 활동의 참여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3.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수업 시수는 해당년도 교육과정에 명시된 총 교과활동시수의 80%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제9장 수업료 및 장학금 추천

제21조(수익자 부담)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비, 수업료, 실험실습비 등의 영재교육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금액을 수익자부담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고 또는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1. 입학생 선발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고, 체험학습 및 캠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로부터 징수한다.
2. 수업료 및 실험실습비에 관한 환불은 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
   가. 수업료: 전출 등으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수업에 참여한 기간을 제외한 비용을 정산하여 환불한다.(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참고, 예시안)

구 분	환불 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학습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업료 전액
	총 수강 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 시간의 50% 까지)	이미 납부한 수업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 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나. 실험실습비 등 자료구입 비용: 전출 등으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비용은 환불하지 않는다.(단, 자료 구입 전에는 비용을 정산하여 환불한다.)

제24조(소외계층 부담) 소외계층(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운영비는 지방비나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추천) 우수자에게 외부 장학금 등의 추천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선발·추천한다.

제10장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제26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영재학급 학칙 개정
3. 기타 필요시

제27조(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영재학급 담당교사, 위원은 교원, 영재교육전문가, 학부모로 구성한다.
2. 선정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외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학칙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21. 12. 31일자로 개정된 학칙은 2022. 3. 1.부터 시행한다.

재능계발영재학급 운영 학교장 의견서

※ 영재교육기관 운영 대한 기관장의 실천 의지를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작성 A4 2쪽 이내

▷ 영재교육 지도교사 확보 및 지원
▷ 영재교육 담당교사 업무경감 및 지원
▷ 영재교육 예산 확보 및 재정 운영
▷ 지역사회 및 학부모와의 협력
▷ 영재교육 기관장의 열의와 발전 전략

위와 같이 학교장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2.○○.

○○학교장 (직인)

※ K-에듀파인으로 제출 시 직인으로 갈음함

■ 영재학급(교육원) 설치·운영 계획 확인 체크리스트

지표 및 요소	운영계획서 필수 반영 항목				확인
	대항목		세부항목	주의사항	(○/X)
1. 영재교육 운영 계획의 적절성 2. 영재교육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활성화 3. 영재교육 과정 운영의 적절성 4. 교수학습 지도 과정 5. 만족도, 우수사례	1	명칭			
	2	위치			
	3	목적			
	4	방침			
	5	조직 및 역할	가. 조직도 나. 영재교육 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6	교원 현황 및 확보 계획	* 교사(강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수 운영에 대한 내용은 명시.	* 세부 운영 계획안은 별도로 내부결재하여 운영.	
	7	시설 및 설비 현황			
	8	소요 경비 (예산 운영안)	가. 예산계획 나. 세부 항목 * 수강료 반환사유 및 반환 기준	* 수익자 부담경비가 있을 경우 방과후 학교 규정 준수하여 명시함.	
	9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세부계획 (교육과정 편제)	가.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향		
			나. 수업 시수 및 시간 배당		
			다. 연간 교육활동 계획		
			라. 영재교육과정 지도 체계 1) 교과활동 2) 비교과 활동(체험학습, 봉사활동, 캠프 등)		
			마. 영재교육 대상자 명단		
			바. 학사운영 1) 교육과정운영계획표 2) 만족도 조사, 학부모 공개수업 실시 등 명시		
			사. 교수학습 지도안	* 강좌별, 차시별 학습목표,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지도안 작성.	
			아. 창의적산출물 발표 계획		
			자. 평가	* 교과활동 및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평가 방법이 반드시 포함.	
			차. 생활지도 계획		
	10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 계획	가. 선발시기		
			나.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다. 선발 방법 및 절차		
			라. 선발 학생의 퇴원 및 결원 보충 방법		
			마. 선발 세부 계획		
			바. 선발 기준		
			사. 동점자 처리기준		
	11	부록	학칙		
	12	각종양식		* 중요한 양식만 추가	
	13	선택 기록 사항	1. 영재교육기관 안전지도 계획 2. 당해 연도 영재학급 중점 사업 계획		
	14	기타 안내	1.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수 운영은 '교원 현황 및 확보 계획'에 실시한다는 내용만 명시하고 세부 계획안은 별도로 내부 결재를 받아서 진행 및 기록할 것을 권장함. 2. 외부강사 선발 계획관련 내용은 별도로 내부 결재를 받아서 진행 및 기록할 것을 권장함. 3. 수익자 부담 경비로 운영 되는 기관인 경우 반드시 '수강료 반환사유 및 반환 기준'을 방과후 학교 규정 준수하여 명시함. 4. 기타 영재기관 평가에 있는 내용을 고려하여 내용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음. (예 : 전년도 운영 결과에 대한 자체분석 및 차년도 운영계획에 반영 계획)		

7 영재교육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관련 자료

1.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발의서 예시

가. 재능계발영재학급 운영 프로그램 개설

안건 번호	

재능계발영재학급 프로그램 개설에 따른 수강료 책정

제출년월일: 2022. . .
제 출 자: ○○학교장
담 당 자: ○○○

---

1. 제안 사유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2022.○○.○○.)의 영재학급 승인결과에 의거 ○○ 분야의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교육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에 대한 성취욕구를 충족시키고, 창의력과 탐구사고력이 뛰어난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 심의를 받고자 함

2. 추진 개요

순	추진 업무	일자	비고
1	· 영재학급 승인 발표	2022.○○.○○.	경기도교육청
2	· 2022학년도 영재학급 전형 공고	2022.10.○○.	
3	· 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 학교추천위원회 추천	2022.11.○○.	
	- 창의적문제해결력 평가(기관별 선택)	2022.12.○○.	
	- 심층면접	2022.12.○○.	
	-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최종 합격자 심의	2022.12.○○. 이후	
	-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발표	2022.12.○○.	
4	· 영재학급 운영	2022.3. ~	

붙임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운영계획서 1부. 끝.

나. 재능계발영재학급 1일형 주제별 체험학습 수익자부담 경비 책정

안건 번호		재능계발영재학급 1일형 주제별 체험학습 운영에 따른 수익자부담 경비 책정	제출년월일: 2022. . . 제 출 자: ○○학교장 담 당 자: ○○○

1. 제안 사유

영재학급 운영계획에 의거 영재성 발현을 위한 기초과학기술의 요람인 ○○과학관 체험 및 멘토를 활용한 멘티들의 심화학습 진행 및 창의력과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 심의를 받고자 함.

2. 추진 개요(예시)

사 업 명	시 기	담 당 자
▪ 체험학습 계획 수립	○○.○○.(화)	
▪ 사전 답사	○○.○○.(토)	
▪ 체험학습 참가여부 안내장 발송	○○.○○.(월)	
▪ 체험학습 참가여부 취합	○○.○○.(목)	
▪ 버스 임대 계약	○○.○○.(금)	
▪ 체험학습 안내장 발송	○○.○○.(토)	
▪ 체험학습 활동비 수납기간	○○.○○.(월) ~ ○○.(수)	
▪ 체험학습 사전지도	○○.○○.(목)	
▪ 체험학습 실시	○○.○○.(수)	
▪ 체험학습 후 사후활동	○○.○○.(목)	

3. 주요 내용

가. 일정: 2022.○○.○○.(○) - ○○.○○.(○)

나. 대상

1) 지도(인솔) 교원: 교사 ○○○, 교사 ○○○

2) 참가 학생: ○○학교 영재학급 학생 40명 전원

다. 장소: ○○○과학관, ○○○체험관

라. 수익자 부담경비: 1인당 _____**원**

2. 영재학급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납부 안내 서식(예시)

청탁금지법! 청렴경기교육의 시작입니다.

○○초등(중)학교

수신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2022학년도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프로그램 수강료 납부 안내

1. 관련: 2022학년도 ○○학교재능계발영재교육 운영계획서 및 ○○학교운영위원회 ○차 회의(2022.○○.○○.)
2. 2022학년도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운영계획에 의거, 영재 조기발굴에 따른 성취욕구 충족에 따른 영재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영재교육대상학생들의 수강료를 다음과 같이 입금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건명: 2022학년도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월 수강료 납부 협조
   나. 기간: 2022.○○.○○.(○) ~ ○○.○○.(○)
   다. 대상: 2022학년도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재학생
   라. 수강료: 1인당 _____원
   마. 입금방법: 해당 학생명으로 무통장 입금(예: 홍길동 농협 123-45-67890)
      ※ 입금시에는 아동명으로 해주시고 혹은 학부모님 명으로 입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 행정실 (○○○-○○○○)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협조사항: 담당교사는 영재학급 대상 학생에게 첨부된 가정통신문 배부 협조

붙임 1. ○○학교 재능계발영재학급 수납 안내장 1부.
2. ○○학교 재능계발영재학급 대상 아동 명단 1부. 끝.

○○학교장

수신자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우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공익제보자는 우리 사회의 용기있는 양심입니다.

2022학년도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월 수강료 납부 안내

햇살이 금빛처럼 빛나고, 그 기운이 산과 들에 만연하려는 때를 맞이하여 학부모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학년도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영재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익자부담경비를 다음과 같이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건명: 2022학년도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월 수강료 납부 협조
2. 기간: 2022.○○.○○.(○) ~ ○○.○○.(○)
3. 대상: 2022학년도 ○○학교재능계발영재학급 재학생
4. 영재학급 운영 프로그램

기관명	총학급수	총인원수	학급편성	학급당인원	수업일	비고
○○학교 재능계발 영재학급	2학급	40명	초5학년(수학+과학)	20명	화, 목요일 15:30~17:00 (2차시)	
			초6학년(수학+과학)	20명		

☞ 세부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람

5. 수강료: 1인당 _____원

☞ 영재학급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지도강사료, 실험실습비는 포함된 금액**이며, **1일형 주제별 체험학습(현장체험학습), 캠프 등은 포함되지 않음**

6. 입금방법: 해당 학생명으로 무통장 입금(예: 홍길동 농협 123-45-67890)

☞ 입금시에는 아동명으로 해주시고 혹은 학부모님 명으로 입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 행정실 (○○○-○○○○)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영재학급 운영 및 수강료 납부에 대한 문의사항은 영재학급 담당교사 (○○○-○○○○)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 학 교 장

8 창의융합상상소 운영 규칙(학칙) 예시

경기미래영재교육원 OO교육지원청 창의융합상상소 운영 규칙(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2017.12.19.개정) 및 동법시행령(2019.7.2.개정)에 의거 영재성이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육성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 및 성취 욕구를 충족시키고, 창의력과 탐구사고력이 뛰어난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경기미래영재교육원 OO교육지원청 창의융합상상소』이라 칭한다.
(이하 '창의융합상상소'이라 한다)

제3조(위치) 본 창의융합상상소는 경기도 OO시 OO구 OO로 OO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수업연한) 본 영재교육원의 수업연한은 단계별 1년 이내로 한다.

제5조(입학자격) 본 영재교육원에 해당 학년별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경기미래영재교육원 창의융합상상소 0권역(OO, OO, OO, OO, OO, OO, OO) 소재 초등학교 3~6학년과 중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자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로서 각 선발 단계를 통해 선정된 자로 한다.
2. 경기도교육청 선발 지침에 의거한 모집 과정에서 모집 예정 인원 내의 추첨 순위를 얻은 자
3. 영재교육원장(교육장)이 최종 선정하여 입학을 허가한 자
4. 타 영재교육기관에 2중 지원하지 않은 자
5.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선발 공고에 따른다.

제6조(소외계층 선발) 정원 내 10%내에서 별도 전형으로 선발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제7조(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학급 수는 경기도영재진흥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총 학급 수 내에서 **초등학교 3,4학년 통합과정, 초등학교 5,6학년 통합과정, 중학교 통합과정으로 1학급당 20명 이내의 정원으로 편성한다.**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평가

제8조(교육과정) 각 학급의 교육과정은 교과활동, 비교과활동으로 편성하며 세부 내용은 해당년도 창의융합상상소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9조(수업일수) 학급별로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교과활동은 총 72시간 이상(1단계 20시간 이상과 2단계 5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기타 비교과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평가는 단계별 활동 상황에 대한 결과를 1회 영재성발달기록부에 기록하여 그 결과를 소속 학교에 통보한다.

제5장 학년, 학기, 휴업일

제11조(학년, 학기) 매 학년은 당해 3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학기 구분은 하지 않는다.
제12조(휴업일) 창의융합상상소 운영 계획에 의거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 실시 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 및 법으로 정하는 임시공휴일을 휴업일로 한다.

제6장 입 학

제13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로 한다.(단, 학기 초 결원 시 예비 합격자를 대상으로 충원하며, 충원가능 기간은 결원일 현재까지 1단계 총 교과수업시수의 10%미만(반올림)인 경우에 한함)
제14조(입학결정) 본 영재교육원의 입학은 학칙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15조(입학서류) 본 영재교육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입학동의서) 입학을 허가 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호자 연서의 입학동의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자) 보호자는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하며, 학생의 영재교육원 교육활동지원 및 등하원 등 안전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7장 전입학·휴학·퇴학

제18조(전입학·휴학·퇴학)

1. 교육과정의 특수성 및 연계성을 위해 타권역 학교로 전출하는 자는 기존과정 수업 참여는 허용하되 전학은 불허하며, 타시도 학생의 전입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2. 본 영재교육원은 비정규과정인 관계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출석이 불가하거나 보호자의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에 휴학을 불허하며 퇴학으로 처리한다.
3. 과제불이행, 수업태만, 수업방해, 정당한 지도교사의 지시 불이행 등의 행동이 지속될 경우 2차례 서면 경고 후, 퇴학시킬 수 있다.

제19조(출결)

1. 다음의 경우, 학교장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공결처리)으로 인정한다.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전염병으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단, 대회 주최가 교육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인 대회만 출석으로 인정하며, 현장체험학습의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는 단체 체험학습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개인)체험학습은 영재교육원 출석 인정에서 제외한다.)
2. 개인자격으로 참가하는 각종 경기 및 대회와 청소년 단체 관련 행사는 학교장의 확인서가 있어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제20조(표창) 품행이 바르고 교과활동, 비교과활동, 연구 활동 분야의 성적이 우수한 자는 학년말에 원장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징계) 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를 가할 수 있다.

1. 출석 정지
2. 퇴학

제8장 과정의 이수 및 수료

제22조(이수 및 수료)

1. 각 단계별 교육과정의 이수는 출석일수와 이수기준을 고려하여 정하되, 개인 성장 중심 평가가 연간계획에서 정한 이수기준 이하인 경우 수료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2. 단계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이수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한다.
3. 총 교과 시수의 80% 이상 이수하고 1, 2단계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1단계 교육과정만 이수한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9장 수업료 및 장학금

제23조(수업료, 입학금) 일체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징수하지 않으며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지원한다.

제24조(수익자 부담) 체험활동 및 캠프활동 등의 비용 중 일부를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장학금) 우수자에게 수여하는 외부 장학금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선발·추천한다.

제10장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제26조(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27조(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담당장학사, 서기는 영재교육전담교사로 구성한다.
2. 선정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외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기타) 학칙에 정하지 않은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내용은 창의융합상상소 선발 모집요강과 창의융합상상소 교육과정 및 운영계획의 내용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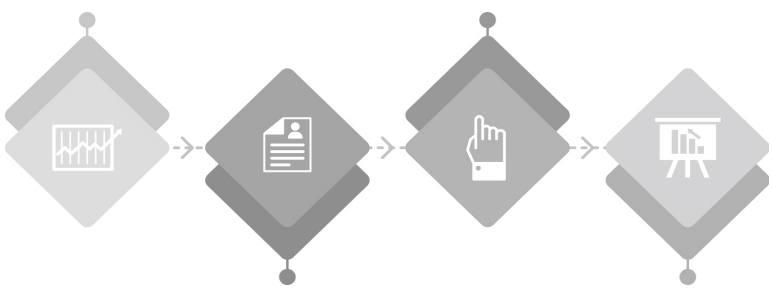
< 부 칙 >

제1조 : 본 학칙은 2022. 3. 1부터 시행한다.

VI

관련 법령

1. 영재교육진흥법
2.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Ⅵ 관련 법령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31호, 2017.12.19, 일부개정]

교육부(융합교육팀) 044-203-6721

제1조(목적) 이 법은「교육기본법」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영재교육"이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재교육기관"이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
4.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5. "영재학급"이란「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을 말한다.
6. "영재교육원"이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한다.
7. "영재교육연구원"이란 효율적인 영재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 및 설치·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8. "영재교육특례자"(이하 "특례자"라 한다)란 이 법에서 정한 영재교육대상자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3. 영재교육기관의 지정·설립·설치 및 운영
4.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설치 및 운영
5.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간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방안의 마련 및 시행
6.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임용과 연수
7. 영재교육에 드는 경비의 지원
8.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②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국가 시책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영재교육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지역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

③국가는 제2항에 따른 영재교육 시책이 부진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4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기능) 영재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영재교육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설립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영재학급 중 국립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7. 영재교육에 드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7.21.]

제4조의2(중앙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 3.23.>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영재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영재의 보호자
5. 영재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6.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4조의3(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기능) 지역 영재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에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시·도의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영재학급 중 공립·사립 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재심에 관한 사항
6. 해당 시·도의 영재교육에 드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7.21.]

제4조의4(시·도위원회의 구성) ①시·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도 교육청 소속 영재교육 담당 공무원
2. 영재교육기관의 장(영재학급의 경우에는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변호사 등 법률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영재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5. 영재의 보호자
6.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①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

1. 일반 지능
2. 특수 학문 적성
3. 창의적 사고 능력
4. 예술적 재능
5. 신체적 재능
6. 그 밖의 특별한 재능

②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6조(영재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 ①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설립 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7조(영재학급의 설치·운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교과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영재학급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8조(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 ①시·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기술·예술·체육 등과 관련 있는 공익법인은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9조 삭제 <2005.12.7.>

제10조 삭제 <2005.12.7.>

제11조(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①영재교육대상자가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영재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이나 대학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받은 대학등의 장은 그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입학할 경우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이수 인정 및 제3항에 따른 학점 인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11조의2(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같은 계열의 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의 연계체계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11조의3(영재학교의 학사운영) ①영재학교는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 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영재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휴업일과 그 밖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7.21.]

제11조의4(학교생활기록) ①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과 성취도 등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관리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23.>
[전문개정 2011.7.21.]

제12조(교원의 임용·보수 등)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용기준·보수·수당·근무조건·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12조의2(교원의 파견근무)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다른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연구원, 교육행정기관, 국내외의 교육 연수·연구 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교원을 파견한 임용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파견한 교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③파견되는 교원의 파견근무 기간, 파견 절차 및 파견근무 중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12조의3(교원의 교육 및 연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13조(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①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영재교육기관의 장은「초·중등교육법」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이 정한 별도의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의 교재 및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14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험실습비, 영재교육 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15조(영재교육연구원) ①국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영재교육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재교육에 관한 이론적 기초연구
2. 영재교육 정책연구
3. 영재의 판별에 관한 연구·개발
4. 영재교육 방법 및 자료의 연구·개발
5. 영재교육지원시스템의 연구·개발
6. 교원 연수자료의 연구·개발 및 연수 실시
7.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8. 특례자의 판별 및 적정 교육과정에 관한 심사
9. 특례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등 진로지도
10. 그 밖에 영재교육 관련 연구 업무 수행

③국가는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을 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⑤영재교육연구원의 조직·운영, 제2항제7호에 따른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전문개정 2011.7.21.]

제16조(특례자 선정 등) ①특례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특례자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이 법에서 정한 영재교육연구원에 판별·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영재교육연구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특례자를 선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특례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학생의 재능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초·중등교육법」제13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문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특례자로 선정되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한 사람은 입학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자에 관한 판별·심사의 기준 및 절차와 통보, 조기입학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17조(특례자 선정에 관한 재심 등) ①특례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신청한 사람과 그 보호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시·도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18조(특례자의 전학·배치 등) ①특례자 및 보호자 또는 특례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교육과정이 특례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자를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학·배치할 것을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학·배치 등에 관하여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전학·배치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18조의2(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부칙 <제15231호, 2017.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교육부(고교교육혁신과) 044-203-67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①교육부장관은 영재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 12. 21.>

1. 영재교육의 기본방향
2. 영재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3.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영재교육실태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5. 영재교육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이하 "영재교육연구원"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7. 그밖에 영재교육진흥을 위한 중요사항

③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장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제3조 삭제 <2006. 12. 21.>

제4조 삭제 <2006. 12. 21.>

제5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6. 12. 21., 2019. 7. 2.>

②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제목개정 2006. 12. 21.]

제6조(중앙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 12. 21.>

[제목개정 2006. 12. 21.]

제7조(위촉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10.]

제8조(수당 등)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를 "시·도위원회"로, "교육부장관"을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10.>

[전문개정 2006. 12. 21.]

제10조의2(시·도위원회의 간사) ①시·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시·도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본조신설 2006. 12. 21.]

제3장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등

제11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①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선정신청서에 재학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1.>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제16조에 따른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1.>

③ 삭제 <2006. 12. 21.>

④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당해 영재교육원의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청자에게 선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영재교육대상자에게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1.>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①영재교육대상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 12. 21.>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신체적 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개정 2006. 12. 21., 2008. 10. 14., 2015. 11. 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5.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③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방법 등(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1.>

④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선정기준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신청접수일 1월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의 학생정원결원의 경우에는 선정신청접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1.>

[제목개정 2006. 12. 21.]

제13조 삭제 <2006. 12. 21.>

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①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재학생이 영재학교에 지정·배치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학교로 보되,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입학시킬 수 있다.

④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입학의 경우에는 출신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에 지정·배치된 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제1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시기) 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은 매학년도 단위로 하되,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입학의 경우에는 학기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학생정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12. 21.>
1.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교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목개정 2006. 12. 21.]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 12. 21.>
1. 당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2. 영재교육전문가
3.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4.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5.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 12. 21.> [제목개정 2006. 12. 21.]

제18조(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①영재학교의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이전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교외의 학교의 장에게 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중인 영재학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학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 및 당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장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설치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①국·공·사립의 고등학교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학칙
2.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3. 학교시설·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5. 학교법인의 지정·전환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6. 그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0조(영재학급의 설치)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학칙
2. 영재교육 담당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급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3.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5. 학교법인의 설치·운영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6. 그밖에 영재학급의 설치승인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예정일 90일전까지 그 설치계획서를 당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는 자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 2006. 12. 21.>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2. 국·공립연구소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과학·기술, 예술, 체육과 관련된 공익법인에 한한다)

②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학칙
5. 교원(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6.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7.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8. 수강료의 징수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9. 설치·운영예정일
10. 당해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류(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1. 그밖에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전에 실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교육감이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연구기관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폐지)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승인한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①교육부장관은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당해 영재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영재학교는 영재학교로 지정되기 전의 학교로 전환된다. 다만, 지정취소 당시 영재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영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를 영재학교로 본다.

③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영재학급이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급의 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당해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제3항의 규정은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장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제24조(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 ①영재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 12. 21.>

②영재학교의 장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 12. 21., 2012. 10. 29.>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영재학급 교사" 라 한다)의 임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 12. 21., 2008. 10. 14.>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21., 2008. 10. 14.>

1.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취득자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영재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학교 교원 임용희망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분야에서 그와 동등한 수준의 학위와 영재교육능력을 보유한 영재학교 교원 임용희망자가 있는 경우에도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0. 14.>

④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은 해당영재학교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겸임 근무할 수 없다. <신설 2006. 12. 21., 2008. 10. 14.>

⑤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의 보수·수당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6. 12. 21., 2008. 10. 14.>

제26조(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①영재교육원의 교원으로 원장 및 강사를 두되, 그 임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원 교원 임용권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영재교육원에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8. 10. 14.>

③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는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임용하되, 그 임용권한의 일부를 영재교육원의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4.>

④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의 보수·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정한다. <개정 2008. 10. 14.>

제27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보수·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공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겸임근무 등) ①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국·공립연구소의 임·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 2006. 12. 21., 2008. 10. 14.>

②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교원 및 임·직원의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영재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기관에 파견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21.>

③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원을 영재교육기관 등에 파견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7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06. 12. 21.>

제29조(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①영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장 및 교감 각 1인
2. 학생 10인당 교사 1인 이상
3.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각 1인

②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에는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학급 담당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영재교육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원장 1인

2.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강사 1인 이상

④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제30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①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 담당교사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제한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하게 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승진 등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및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연수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6. 12. 21., 2008. 2. 29., 2013. 3. 23.>

②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 강사로 임용된 자는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를 승인한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게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영재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08. 10. 14.>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①영재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기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수업일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급편성(영재학급을 둔 학교의 영재학급 편성을 포함한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⑤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수업시간중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과활동외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등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
⑥학교의 수업시간에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학교의 장은 영재교육기관에 출석한 것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⑧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외에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33조(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34조(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① 삭제 <2008. 10. 14.>
②영재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영재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를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1., 2008. 10. 14.>
③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는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교육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에서 사용할 도서 또는 교재 등을 개발하여 이를 영재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5조(이수인정 및 위탁교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제목개정 2006. 12. 21.]

제35조의2(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동일계열로 진학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대학교육 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해당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12. 21.]

제36조(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①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영재교육원의 장은 해당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 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4.>
②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영재교육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의 생활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되, 해당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신설 2006. 12. 21.>

제37조 삭제 <2006. 12. 21.>

제5장의2 특례자의 선정 등 <신설 2006. 12. 21.>

제37조의2(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영재교육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1. 법 제2조제8호의 영재교육특례자(이하 "특례자"라 한다) 선정심사
2. 특례자 전학·배치심사
3. 그 밖에 특례자에 대한 심사를 위해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가 정한 사항 [본조신설 2006. 12. 21.]

제37조의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영재교육연구원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재교육전문가
2. 심리 및 상담분야 전문가
3. 특수재능분야 전문가
4. 특수재능분야의 교육을 제공하는 영재교육기관 또는 대학등의 관계자
5. 그 밖에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에 대한 연구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④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 12. 21.]

제37조의4(특례자의 선정 등) ①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및 증빙서류 또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의 추천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특례자선정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의뢰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 선정심사를 영재교육연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영재교육연구원장은 교육감의 특례자 선정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특례자 선정심사를 위해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에게 각종 검사에 응하거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영재교육연구원장은 선정심사결과를 해당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영재교육연구원장의 선정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교육감은 선정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기관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례자를 해당교육기관에 입학·배치할 수 있다.

제37조의5(특례자 선정기준 등) ①특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신체적 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선정에 관한 세부심사기준 그 밖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6. 12. 21.]

제37조의6(특례자의 전학·배치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학·배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전학·배치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 전학·배치심사를 영재교육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다.

③영재교육연구원장은 교육감의 특례자 전학·배치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학·배치 여부를 심의하고, 영재교육연구원장은 전학·배치심사결과를 해당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영재교육연구원장의 전학·배치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교육감은 전학·배치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기관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례자를 해당교육기관에 전학·배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 12. 21.]

제6장 보칙

제38조(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운영)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0. 14.>

1. 한국교육개발원
2. 한국과학기술원
3. 영재교육관련 전문분야의 연구기관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한국교육개발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한국과학기술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연구기관을 각각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을 제외한다)을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0. 14., 2013. 3. 23., 2017. 7. 26.>

③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0. 14., 2013. 3. 23.>

제38조의2(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①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은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할 수 있다.

1.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과의 연계협력망 구축·운영
2. 영재교육대상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영재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교수·학습자료 수집 및 관리

4. 영재교육 담당교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5. 영재교육 관련 연구·지식·정보 공유체제 구축 등

②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은 관련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 12. 21.]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①영재교육연구원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5. 강사의 성명·생년월일·담당과목·전공분야
6. 연수원 규칙
7. 교지·교사·체육장과 실습시설 등에 관한 사항(도면첨부)
8.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②교육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수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체계성
2. 연수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연수시설 및 장비 등 연수 환경의 조성

③교육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그 밖의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6. 12. 21.]

제39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분야의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시설비·기자재비·운영비·교재개발비·교원연구비 및 학생장학금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1.,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2006. 12. 21.]

제4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6.]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한

2022
영재교육실무편람

■ 발 행 : 2022. 1.

■ 인 쇄 : 2022. 1.

■ 발행인 : 경기도교육감

■ 발행처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의정부시 동일로 700
(우)11759

▣ 편찬
정재아(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

▣ 총괄
최경순(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장학관)
이인숙(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융합과학교육부장)

▣ 기획
강정화(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장학사)
박성동(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구사)

▣ 자문
김미경(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장학사)
선종삼(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장학사)

▣ 자료개발 위원단
유경우(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사)
배승화(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사)
이은지(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사)
김은애(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사)
김흥수(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사)
유해경(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사)
조연정(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사)
지원(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사)
이종선(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교사)